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

```
제정 2006.12.11. 기준 제 48호
   개정 2008.07.04. 기준 제 82호
   개정 2008.07.31. 기준 제 85호
   개정 2008.11.11. 기준 제 89호
   개정 2009.02.06. 기준 제103호
   개정 2009.03.02. 기준 제107호
   개정 2009.06.03. 기준 제112호
   개정 2009.11.25. 기준 제120호
   개정 2010.06.29. 기준 제133호
   개정 2010.11.26. 기준 제148호
   개정 2011.04.28. 기준 제163호
   개정 2011.07.01. 기준 제165호
   개정 2011.11.28. 기준 제175호
   개정 2012.02.28. 기준 제182호
   개정 2012.04.25. 기준 제188호
   개정 2013.04.04. 기준 제227호
   개정 2013.12.13. 기준 제256호
   개정 2014.02.04. 기준 제261호
   개정 2014.04.22. 기준 제267호
   개정 2014.11.21. 기준 제276호
   개정 2015.09.11. 기준 제292호
   개정 2016.05.03. 기준 제307호
   개정 2016.07.21. 기준 제315호
   개정 2017.02.15. 기준 제330호
   개정 2017.12.22. 기준 제349호
   개정 2018.02.28. 기준 제376호
제목개정 2018.12.28. 세칙 제154호
   개정 2019.06.26. 세칙 제158호
   개정 2019.11.20. 세칙 제164호
제목개정 2019.12.09. 세칙 제167호
   개정 2019.12.20. 세칙 제170호
   개정 2019.12.31. 세칙 제174호
   개정 2020.05.04. 세칙 제178호
   개정 2020.10.19. 세칙 제187호
   개정 2021.10.22. 세칙 제197호
   개정 2021.11.23. 세칙 제199호
   개정 2022.12.06. 세칙 제213호
   개정 2023.07.10. 세칙 제224호
   개정 2024.01.12. 세칙 제261호
   개정 2024.04.04. 세칙 제265호
   개정 2025.01.02. 세칙 제274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파견 규정」의 시행에 필요

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19.12.09., 2021.11.23.>

제1조의2(적용범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해외봉사단파견 사업에 관하여 「해외봉사단파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다른 내규에서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21.11.23.〉 〈개정 2025.01.02.〉

제2장 모집 및 선발

- 제2조(모집방법) ① 협력단은 해외봉사단원(이하 "봉사단원"이라 한다)을 모집 기수 별로 따로 모집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중 상시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② 모집공고는 일간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또는 협력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 ③ 협력단은 연간 봉사단원 모집 및 파견 계획을 정하여 협력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수 있다. 〈신설 2025.01.02.〉
- **제3조(지원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 2.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재학생의 경우) 1부 <개정 2012.04.25.>
 - 3. 해당 직종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
 - 4. 해당 직종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
 - 5. 보호자동의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미성년자(만19세 미만)) <개정 2012.04.25. 2016.05.03., 2018.12.28., 2021.10.22.>
 - 6. 질병·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2.04.25., 개정 2015.09.11. 2016.05.03., 2021.10.22., 2025.01.02.>
 - 7. 〈삭제 2021.10.22.〉
 - ②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통계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보유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12.28.〉
- 제4조(서류심사 전형) ①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는 내·외부 심사위원을 섭외하여 별표 1의 서류심사 기준표에 따라 진행하며, 서류심사 점수 20점 미만 득점자와 별표 1-2에 해당하는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② 서류심사 통과자는 직종별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한다.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3배수를 초과할 수 있다.
 - ③ 협력단은 지원자에게 별표 17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협력단은 서류전형 지원자를 대상으로 봉사단원으로서 활동에 적합한 품성과 자질, 현지 적응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적합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부적합인 지원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4.01.12.] [제목개정 2024.01.12.]

- 제5조(면접 전형) ① 규정 제4조제2항에 의한 면접은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기술 면접 및 일반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협력단은 면접 지원자에게 별표 1-1에 따른 면접료(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기술면접은 50점을 만점으로 하고 면접항목과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면접위원별 3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1. 이론능력: 10점
 - 2. 응용력: 20점
 - 3. 직종 적합성: 20점
 - ③ 일반면접은 50점을 만점으로 하고 면접항목과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개인면접과 토의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위원별 3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1. 개인면접: 30점(지원동기 10점, 태도 10점, 적응력 10점)
 - 2. 토의면접: 20점(친화력 10점, 소통력 10점)
 - ④ 면접심사 통과자는 면접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총 100점 만점)이 60점 이상 인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직종별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하되, 동점자는 협력단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할 수 있다.
 - ⑤ 협력단은 지원자에게 별표 17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⑥ 선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면접전형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다.
 - ⑦ 모집선발에 참여하는 외부 면접위원은 협력단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면접 대상자로부터 이를 취해서는 안되며, 모든 면접위원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면접위원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 협력단은 면접위원 위촉시 업무대만, 업무 수행 능력부족 및 부패행위 등의 관련자를 배제해야 한다.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사대상 관련 이해관계자로서 별지 제23-2호 서식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업무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한다.
 - ⑨ 협력단은 지원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면접전형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01.12., 2025.01.02.] [제목개정 2024.01.12.]

제5조의2 삭제 <2024.01.12.>

제6조 삭제 <2024.01.12.>

제7조 삭제 <2018.12.28.>

제8조(신체검사 전형) ① 삭제〈2013.04.04.〉

- ② 신체검사 대상자는 협력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검사 비용은 협력단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04.25., 2021.11.23.>
- ③ 최초 검사에서 신체검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원자의 경우 자비로 재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01.12.>
- ④ 협력단은 신체검사 결과 봉사단원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

- 는 자를 불합격처리할 수 있다. 또한, 신체검사 통과자 중 지속적인 자발적 질병 관리가 필요한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25., 2018.12.28., 2025.01.02.>
- ⑤ 제4항에 따른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르며, 필요시 관련 전문 가의 자문을 얻어 동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04.25., 2013.04.04., 2018.12.28., 2020.10.19., 2025.01.02.>
- ⑥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협력단의 판단에 따라 조건부 합격 또는 발표 보류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01.12.〉
- ⑦ 신체검사 결과는 협력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가 개별 확인하도록 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신설 2024.01.12.〉

[제목개정 2024.01.12.]

- 제9조(국가배정 전형) ① 협력단은 제8조의 신체검사에서 선발된 자에게 아래 각 호의 순서를 기준으로 파견국 및 소속기관을 배정하여 합격자를 최종적으로 정한다.
 - 1. 지원자의 자격요건과 파견수요 요구조건 간 부합성
 - 2. 지원자의 파견 희망국가
 - 3. 면접전형 고득점
 - ② 협력단은 합격자 이외에 면접전형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지원자 중 일부를 예비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다. 예비합격자 자격은 해당 선발기수 국내교육 참가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주일 동안 유지되며, 협력단은 합격자 결원 시 위 기간 내에 예비합격자 중 적격자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 ③ 협력단은 합격자(제2항에 따라 예비합격자 중 합격자로 충원된 자 포함)를 대상으로 국내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4.01.12., 2025.01.02.] [제목개정 2024.01.12.]

제3장 국내교육 및 계약체결

<전문개정 2012.04.25.>

- 제10조(교육원 운영) ① 협력단은 월드프렌즈 해외봉사단 교육을 위해 글로벌인재교 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 ② 삭제 <2025.01.02.>
 - ③ 모집 및 선발전형을 통과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내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외봉사단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 자격으로 국내교육에 참가한다. 〈개정 2025.01.02.〉
 - ④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월드프렌즈 해외봉사단 교육기획 및 운영
 - 2. 교육원 예산수립 및 관리(정산업무 포함)
 - 3.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연구 및 교재개발
 - 4. 월드프렌즈 온라인플랫폼 운영 및 관리

- 5. 교육과정 평가 및 통계관리
- 6. 강사 운영 및 관리
- 7. 교육생 학사관리 및 출국지원
- 8. 교육원 자산 및 시설관리
- 9. 교육원 각종 계약업무 수행
- 10.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11.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05.03.] [전문개정 2021.11.23.]

- 제11조(국내교육) ① 협력단은 국내교육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 국내교육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교육생"이라고 함)에 대하여 봉사단원으로서의 자질함양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규정 제6조에 따른 국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원은 기수별 교육계획을 통해 교육과정의 예산, 교육 프로그램 구성, 강사섭외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봉사단원 최종 선발 결과와 당해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 개시 전까지 기수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③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기한 내에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내교육 참가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 : 교육 참가 전 제출
 - 2. 국내교육 성실이행 서약서(별지 제3-2호 서식) : 국내교육 참가 시
 - 3. 청렴서약서(별지 제35호 서식) : 교육 참가 시
 - 4. 기타 국내교육 및 원활한 파견준비를 위하여 협력단이 요청하는 서류
 - ④ 교육생은 파견 전 국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원의 제반규정과 지 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 ⑤ 협력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교육과정 중 필수교육과정을 제외한 일부 교육의 이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1. 동일 국가, 동일 직종 활동 후 계약이 만료된 단원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국내교육 입교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어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학능력을 갖추어 별표 13의 어학교육 면제 기준에 해당되는 자 또는 외국어강사가 해당 언어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삭제 <2025.01.02.>
 - 4. 신종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업 참여 자격 및 상태를 별도 안내받은 자
 - ⑥ 중도귀국자는 국내교육과정을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 ⑦ 국내교육 수료 이후 출국대기 중인 교육생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교육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교육 중 또는 출국대기 기간 중 파견국이 변경된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소양교육
 - 2. 안전관리교육
 - 3. 외국어 교육 등

[제목개정 2012.04.25.] [전문개정 2025.01.02.]

- 제11조의2(국내교육 내용) ① 교육원은 파견국, 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온/오프라인 형태로 편성 및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5.03., 2021.11.23., 2025.01.02.〉
 - 1. 일반교육: 공통 과정으로 소양교육, 인성교육, 안전교육, 성인지 등에 중점을 둠 <개정 2019.12.20.>
 - 2. 특화교육: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반교육 외 추가적으로 특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에서 해당 교육을 주관할 수 있음. <개정 2019.12.20., 2025.01.02.>
 - 가. 삭제 <2019.12.20.>
 - 나. 삭제 <2019.12.20.>
 - 다. 삭제 <2019.12.20.>
 - 3. 어학교육: 현지어를 중심으로 하되, 교양과목으로 기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어학교육이 면제된 교육생은 타 교육생의 해당 어학교육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실시해야 함 〈개정 2018.12.28., 2019.12.20., 2025.01.02.〉
 - 가. 삭제 <2018.12.28.>
 - 나. 삭제 <2018.12.28.>
 - 4. 건강 및 안전관리 교육
 - 5. 기타 현지적응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 6. 성폭력 예방 등 양성평등 교육
 - 7. 청렴실천교육 〈신설 2018.12.28.〉
 - ② 국내교육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은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 유형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04.25., 2019.12.20., 2021.11.23., 2025.01.02.〉

[제목개정 2012.04.25.]

- 제11조의3(국내교육 운영비) ① 교육원은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교육운영비를 집행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 1. 강사수당
 - 2. 강사여비
 - 3. 워고료
 - 4. 교재 제작비
 - 5. 교육 진행비
 - 6.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
 - ② 교육원은 협력단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여 교육운영비를 집행하고,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에 정산하여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6.05.03.] [제목개정 2018.12.28.]

제11조의4(국내교육 교재의 편찬 및 배부) 교육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 부교재, 강 의자료 등 온/오프라인 교재를 제작할 수 있으며, 교재의 성격에 따라 단·내외 인사 또는 당해 교과목 강사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본조신설 2016.05.03.] [제목개정 2018.12.28.]

- 제11조의5(국내교육 강사의 운용) ① 교육원은 협력단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특정 과목의 강의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자)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강사는 일반강사, 보조강사, 외국어강사로 구분한다.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협력단 「ODA 교육사업 규정」 별표 1 교육운영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2021.11.23.. 2025.01.02.〉
 - ③ 협력단은 국내 교육 중 외국어 교육을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5.01.02.>
 - ④ 강의에 섭외된 강사는 교육 개시 전까지 이력서 및 강의원고를 교육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⑤ 교육원은 외래강의, 외국어강사 선정 시 이력서 등을 통해 검증된 강사를 대상으로 구성한 강사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 ⑥ 강사풀은 제11조의8제1항의 교육결과 및 제11조의9제1항의 교육생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시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2.>
 - ⑦ 교육원은 강사료 지급 및 강사풀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28호와 같이 강사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8.〉

[본조신설 2016.05.03.] [제목개정 2018.12.28.]

- 제11조의6(국내교육 지원내역) ① 협력단은 효과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국내교육대상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교육 면제자에게는 제2호 및 제3호를 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에는 지원 내역의 종류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4.25, 2016.05.03., 2018.12.28., 2025.01.02.〉
 - 1. 국내교육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개정 2024.04.04.>
 - 2. 운동복, 생필품, 실습기자재 등 국내 교육에 필요한 지원물품 <신설 2024.04.04.>
 - 3. 건강한 현지활동 및 비자발급에 필요한 별표 16의 예방접종 <신설 2018.12.2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교육 중단 및 출국 전 포기자에 대해서는 지급했던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6.05.03.>

[제목개정 2012.04.25., 2018.12.28.]

- 제11조의7(국내교육 모니터링) 협력단은 국내교육 시 소속 직원을 지정하여 강의 모니터 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 개선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1.02.〉 [본조신설 2016.05.03.] [제목개정 2018.12.28.]
- 제11조의8(국내교육 결과보고) ① 국내교육 실시 후 프로그램 편성 및 경비집행 내역, 강사명단 등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 정 2025.01.02.>

② 삭제 <2018.12.28.>

[본조신설 2016.05.03.] [제목개정 2018.12.28.]

- 제11조의9(국내교육 평가) ① 국내교육과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국내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5.01.02.>
 - ② 제1항의 교육종합평가는 온/오프라인 과정에 대한 학습평가 및 교육태도평가로 구성한다. 단, 과정별 학습평가는 교육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평가내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2021.11.23.>
 - 1. 학습평가(70점) <개정 2021.11.23.>
 - 2. 교육태도평가(25점) <개정 2021.11.23., 2025.01.02.>
 - 가. 생활수칙 준수 : 교육원 반입금지물품 소지여부, 불성실 교육참여, 무단결석, 타 숙소 및 통제구역 무단출입, 주류소지 및 무단음주 등 교육수칙 준수 여부 〈개정 2021.11.23., 2025.01.02.〉
 - 나. 외출 · 외박 준수 : 외출 · 외박 신청 기준 등 준수여부
 -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의 내용 중 동시에 두 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감점만 부여
 - 3. 동료상호환류(5점) <신설 2025.01.02.>
 - ③ 제2항의 평가항목 및 국내교육 수료기준은 매 기수별 교육계획 수립 또는 교육원 운영수칙 개정을 통해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본조신설 2016.05.03.]

- 제11조의10(국내교육의 중지) ① 협력단은 제13조의 교육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생에 대한 국내교육의 중지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4.25., 2013.04.04. 2016.05.03., 2018.12.2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심의·의결과 관계없이 교육중지 및 퇴교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교육원장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6.05.03.〉 〈개정 2018.12.28.〉
 - 1. 국내교육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 2. 폭력, 폭언, 기물 파손, 성비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포함. 이하 같음.), 절도, 도박, 교육시설 무단이탈 등, 규정 및 이 세칙을 위반한 자 〈개정 2025.01.02.〉
 - 3. 삭제 <2018.12.28.>
 - 4. 삭제 <2018.12.28.>
 - 5. 삭제 <2018.12.28.>
 - 6. 국내교육 중도포기 및 출국포기 의사를 밝힌 자
 - 7. 제2호에 해당하거나 제2호에 준하는 부당행위에 대해 서면으로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개선을 거부하거나 부당행위가 지속 또는 악화된 경우 〈신설 2025.01.02.〉
 - 8. 건강 이상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교육 지속이 어려운 자 〈신설

2025.01.02.>

[제목개정 2012.04.25.]

- **제11조의11(교육생 포상)** ① 협력단은 국내교육 수료자 중 우수교육생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12.20.>
 - ② 삭제 <2018.12.28.>
 - ③ 삭제 <2019.12.20.>
 - ④ 포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협력단은 최종 선정된 우수교육생을 발단식 행사 등 기수별 국내교육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12.20.>

[본조신설 2016.05.03.]

- 제12조(국내교육 수료) ① 협력단은 제11조의9제2항 교육종합평가 총점이 70점 이상 인 자를 대상으로 국내교육 수료 후 별지 제27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12.28., 2021.11.23.>
 - ② 교육원은 국내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실시한다. 제11조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국내교육 일부 면제자도 수료식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별도 경비(여비 등)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8., 2019.12.20., 2021.11.23.〉

[본조신설 2016.05.03.] [제목개정 2018.12.28.]

- **제13조(교육위원회)** ①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신설 2016.05.03.〉 〈개정 2018.12.28.〉
 - 1. 위원장: 글로벌인재교육원장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0.〉
 - 2. 위원: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합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대리참석을 금한다. <개정 2018.12.28., 2019.12.20., 2025.01.02.>
 - 가. 내부위원 : 해외봉사단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단 임직원 <신설 2019.12.20.> <개정 2025.01.02.>
 - 나. 외부위원: 협력단이 관리하는 위원 후보군(POOL) 내에서 봉사단 또는 자문단 사업 운영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단, 심의 안건에 따라 특수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경우, 관련 수당 및 자문료 지급은 협력단 예산집행지침상 관련 경비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20.〉
 - 3. 간사 : 부의된 안건을 담당하는 학사관리 담당직원으로 한다. 〈신설 2025.01.02.〉
 - 4.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 관계자 및 업무 담당 직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 수당 및 자문료 지급 필요시, 협력단예산집행지침상 관련 경비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20.〉, 〈개정 2025.01.02.〉]
 - ② 간사는 부의 안건에 대한 검토자료를 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심의대상자에게 교육위

원회 개최일정 통보 및 녹취 사실·소명기회 부여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심의시회의진행기록 일지를 작성하며, 심의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한다. <개정 2018.12.28., 2019.12.20., 2025.01.02.>

- ③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교육수칙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2019.12.20.>
- 1. 성비위, 폭력 등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육수칙 위반사항 〈개정 2025.01.02.〉
- 2. 교육생의 심신·건강상태가 국내교육 지속 및 해외봉사단원활동에 적합한지 여부 〈개 정 2024.01.02.〉
- 3. 국내교육을 이수하였지만 단원 계약이 시작되지 않은 자의 해외봉사단원 적합 여부 〈신설 2025.01.02.〉
- 4.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5.01.02〉
- ④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과반 또는 과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8.12.28.. 2019.12.20.>
- ⑤ 교육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협력단에 별지 제34-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20.〉
- ⑥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일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 ⑦ 교육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3. 기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안건과 관련된 내·외부 업무 담당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교육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 ⑨ 교육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위원회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신설 2019.12.20.>
- 1.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 3. 심의안건, 발언 요지, 의결내용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① 교육위원회 회의록 주요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2025.01.02〉

[본조신설 2013.04.04.] [전문개정 2016.05.03.] [제목개정 2018.12.28.]

제13조의2(교육위원회 양정의 기준) ① 교육위원회가 교육수칙 위반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1. 주의: 경고 사유에 미치지는 아니하나 제 규정과 교육생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 2. 경고: 중대한 교육수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동시에 계속 교육생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파견을 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퇴교(또는 계약해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어 협력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경우
- ② 교육위원회는 교육생이 행한 행위가 주의사유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구두주의 처분을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봉사단원에게 별지 제18-1호 서식의 촉구장을 송부한다.
- ③ 본조의 징계기록은 현지 활동 중 복무 관리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와 합산되어 제36조에 따른 제재집행 시 반영한다.
- ④ 구두주의 3회는 주의 1회,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를 2회 받은 교육생은 교육생 자격이 상실되며, 위원장은 즉각 국내교육을 중지하고 퇴교 조치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상기 조치결과를 관련 부서 및 해외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건강 이상으로 국내교육생 및 봉사단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퇴교 조치(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전문개정 2025.01.02]

- 제13조의3(교육위원회 의결 및 집행) ① 교육생이 제1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교육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② 간사는 제1항의 심의·의결 요구시 심의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 중에 필요한 관계 자료와 필요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해당 교육생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교육위원회 의결요구서를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5.01.02.〉
- ③ 해당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진술서를 제출요구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여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
- ④ 교육위원회가 제13조의2에 따라 한 각 조치결과를 별지 제32호 서식의 교육위원회결과통지서에 기재하여 해당 교육생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2.〉
- ⑤ 퇴교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생을 즉각 귀가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본조신설 2018.12.28.]

제13조의4(교육위원회 재심) ① 교육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또는 구두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교육생이 이에 불복할 때에는 교육위원회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교육생은 재심에 대한 결과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1차 위원회 결과에 따라야 하며, 퇴교의 경우는 즉각적으로 교육을 중지하고 협력단의 지시에 따른다.
- ③ 교육생이 재심을 요청한 경우 재심은 그 의결조치의 양정을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 ④ 교육위원회는 재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재심 결과를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심의 절차 내지 처분,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을 준용하다.

[본조신설 2019.12.20.] [전문개정 2025.01.02.]

- 제13조의5(교육위원회 위원 제척·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위원이 속한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증언ㆍ자문 등을 한 경우
 - 4. 위원이 국무조정실ㆍ기획재정부ㆍ외교부 전직 및 현직 공무원인 경우
 - 5.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 ② 교육위원회의 간사 또는 심의 안건의 대상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피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내·외부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④ 교육위원회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사유를 확인하는 즉시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전문개정 2025.01.02.]

- 제14조(계약체결) ① 협력단은 규정 제7조에 따라 국내교육을 이수한 자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월드프렌즈봉사단원 활동계약(이하 "단원계약"이라 한다)을 출국 전에 체결하여 봉사단원으로 결정한다. 다만, 프로젝트 봉사단원은 국내교육 시작일을 계약 시작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단원계약을 체결한 봉사단원은 별지 제5-1호 서식의 서약서를 출국전에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25.01.02.>
 - ④ 규정 제10조에 따라 배우자를 동반하는 시니어단원은 단원계약 체결 시 별지 제5-2호 서식의 배우자 동반 안전책임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며, 파견기간 중 발 생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출국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6.05.03.] [전문개정 2025.01.02.]

제14조의2(파견) ① 협력단은 계약을 체결한 봉사단원에 관한 출국수속을 거쳐 봉사단

원을 파견국에 파견한다.

- ② 삭제 <2018.12.28.>
- ③ 계약이 종료된 봉사단원은 계약종료일이 지난 이후에 파견국에서 출국해야 한다.
- ④ 삭제 <2025.01.02.>

[본조신설 2016.05.03.] [전문개정 2025.01.02.]

- 제14조의3(국내 대기기간) ① 봉사단원은 국내교육 수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파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지 사정 및 자연재해 등으로 조속한 출국이 어려운 경우, 국내교육 수료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협력단은 파견국 변경, 파견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04.] [전문개정 2025.01.02.]

제4장 현지적응교육

<개정 2012.04.25.>

- 제15조(현지적응교육) ① 협력단은 파견국에 도착한 봉사단원에 대하여 당해 국가의 언어·문화·활동분야 등에 관한 이해증진과 현지적응을 위한 현지적응교육(이하 "현지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며, 봉사단원은 현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국가에 재파견된 봉사단원이 현지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협력단은 현지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04.25.] [전문개정 2025.01.02.]

제16조(현지교육의 주관) 해외사무소장은 본부 협력단 지침에 따라 현지교육을 주관, 실시하고 필요시 교육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04.25., 2016.05.03., 2025.01.02.〉

[제목개정 2012.04.25.]

- 제17조(현지교육계획) ① 협력단은 교육의 기간, 방법, 중점사항, 예산 편성기준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 현지교육 실시방침을 해외사무소장 등에게 서면으로 안내하고, 해외사무소장은 그 방침을 반영한 별지 제7호 서식의 현지적응교육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해외사무소장 등은 해당 연도 현지교육 실시방침 및 제1항의 실시계획서에 따라 현지교육을 실시한다.
 - ③ 현지교육은 국내교육과 연계하여 현지어, 안전관리, 현지사정교육, 현지활동 기본교육, 공동체 활동 등을 위주로 편성하고 교육기간 중 소속기관 OJT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해외사무소장은 현지교육 종료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지어 심화학습을 포함하여 단원 역량강화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습기간, 학습방법, 강사섭외 기준 등은 제1항 의 현지교육 실시방침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2.04.25.] [전문개정 2016.05.03., 2025.01.02.]

제17조의2(현지교육 중지) 현지교육 실시 중인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

- 우, 해외사무소장은 규정 제19조에 따라 해당 단원에 대한 교육을 중지하고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32조,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른다.
- 1. 폭력, 폭언, 기물 파손, 성비위, 절도, 도박, 교육시설 무단이탈 등 규정 및 이 세칙을 위반한 자
- 2. 현지교육 미참석 시간이 전체교육과정의 20%를 초과할 경우
- 3. 삭제 <2018.12.28.>
- 4. 현지교육 중도포기 의사를 밝힌 자
- 5. 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1호에 준하는 부당행위에 대해 서면으로 개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개선을 거부하거나 부당행위가 지속 또는 악화된 경우
- 6. 건강 이상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교육 지속이 어려운 자

[본조신설 2016.05.03.] [전문개정 2025.01.02.]

제18조(현지교육정산) 해외사무소장 등은 현지교육 종료 후 15일 이내 교육경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경비를 우선 정산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결과를 별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2.02.28, 2012.04.25. 2016.05.03., 2025.01.02.〉

[제목개정 2012.04.25.]

제5장 복무관리

- 제19조(비상연락체계유지) 봉사단원은 재외공관장 및 해외사무소장 등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정기활동 및 성과보고) 규정 제12조에 따라 봉사단원은 정기활동 및 성과보고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 및 제출일 등은 별도로 정한다.
 - ① 삭제 <2025.01.02.>
 - ② 삭제 <2025.01.02.>
 - ③ 삭제 <2025.01.02.>

[전문개정 2021.11.23.] [전문개정 2025.01.02.]

- 제20조의2(역량평가) ① 협력단은 봉사단원의 활동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 중인 봉사단원에 대해 개인별 역량평가(언어역량 진단평가 등)를 시행할 수 있으며 봉사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해외사무소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시 평가 일정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평가 기간, 평가 방법, 평가 대상자 선정 등은 본부에서 정한 평가 계획에 따른다. 다만,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해외사무소장의 판단 하에 해외사무소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1.02.]

제21조(안전상황보고) ① 봉사단원은 규정 제12조에 따라 매월 안전상황 보고서를 작

성하여 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며, 서식 및 제출일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② 휴가 및 해외사무소 주관 집합 행사를 제외하고 파견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 서식의 봉사단원 이동보고서를 제출하고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등 부득이한 경우 파견지 이외의 지역 방문이 제한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1.02.]

- 제22조(소속기관 변경) 봉사단원이 규정 제14조에 따라 소속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10-2호 서식의 소속기관변경신청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봉사단원의 소속기관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2. 봉사단원의 활동지역이 치안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부적절하게 된 경우
 - 3. 기타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01.02.]

- 제23조(거주지 변경) 해외사무소장 등은 봉사단원이 파견기간 중 소속기관·봉사활동의 변동 및 안전문제 등으로 별지 제10-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기준에서 정한 주거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5.01.02.〉
- 제24조(일시귀국) ① 규정 제15조에 따라 일시귀국 하고자 하는 봉사단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협력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시귀국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15일 이내
 - 2. 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등 기타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7일 이내
 - 3. 삭제 <2021.11.23.>
 - 4. 규정 제15조제1항제4호의 경우 7일 이내
 - 5. 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30일 이내. 다만, 중기 봉사단원은 15일 이내
 - 6. 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의 경우 60일 이내
 - ② 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규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시귀국 할 경우 해외 사무소장 등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의 경우에는 협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삭제 <2021.11.23.>
 - ④ 제1항에 따른 일시귀국은 분할실시 할 수 없으며, 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경우 파견국 현지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⑤ 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귀국은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8., 2025.01.02.]
- 제25조(휴가) ①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휴가는 장기봉사단원은 파견국내 및 파견국외 휴가를 위해 최초 파견시 1년 기준 15일이 주어진다. 다만, 중기봉사단원은 파견국내

휴가를 위해 최초 파견시 5일이 주어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파견국내 및 파견국외 휴가를 위해 사용하며, 파견국내 휴가는 휴가 실시 1주 전에, 파견국외 휴가는 휴가 실시 2주 전에 해외사무소장 등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휴가 종료 후에는 해외사무소의 지침에 따라 즉시 귀임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적응교육 기간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된다.
- ③ 봉사단원은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파견국외 휴가를 실시할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해외사무소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파견국외 휴가는 연간 10일을 넘을 수 없다.
- ④ 파견국외 휴가는 파견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⑤ 파견국외 휴가는 본국 또는 제3국가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미수교국 및 전쟁 발발 지역,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 이상 지역 등 위험지역은 휴가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다.
- ⑥ 휴가 경비는 봉사단원이 부담한다.
- ⑦ 제3항의 파견국외 휴가는 일괄 또는 분할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휴가를 분할 실시하는 경우, 그 횟수는 연 2회 이내로 한다.
- ⑧ 삭제 <2025.01.02.>
- ⑨ 삭제 <2025.01.02.>
- ① 삭제 <2025.01.02.>
- ① 계약 연장 시 연장 신청기간 3개월마다 4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최초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 잔여 휴가는 계약 연장 시 이월 가능하다.

[제목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25.01.02.]

제26조 삭제 <2019.12.31.>

- 제27조(차량운행 금지) 봉사단원은 파견기간 중 소속기관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 (이륜전동기,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없다. <개정 2025.01.02.>
- 제28조(가족 등 초청) ① 봉사단원은 현지적응교육 종료 후 가족 등을 파견국에 초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단은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모든 초청에 대하여 합한 초청 일수가 연 30일을 초과한 경우 해외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5.01.02.]

- 제29조(본국 또는 제3국 대피) 협력단은 파견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봉사단원의 활동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의 봉사단원에게 본국 또는 제3국으로의 대피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1.23., 2025.01.02.〉
- 제30조(계약연장) ① 규정 제17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봉사단원은 파견 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봉사활동 계약연장 신청서와 현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8조에 따른 제재조치 결과 경고를 받은 경우, 계약

연장이 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1.02.]

제31조(계약해지)

- ① 봉사단원은 규정 제19조제3호의 사유로 봉사활동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단원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계약해지 신청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귀국하였으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협력 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협력단은 봉사단원이 아래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복무 관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현지 부적응. 현지인과 불화. 허위 정보 유포 등
 - 2. 해외사무소 및 소속기관 등에 비협조적인 태도
 - 3. 극심한 스트레스, 건강 이상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 ④ 협력단은 계약해지된 봉사단원에게 별지 제18-4호 서식의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25.01.02.]

제6장 복무 관리 심의위원회

<제목개정 2018.12.28.>

- 제32조(심의위원회) ①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복무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소관 본부장
 - 2. 내부위원: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팀)장급 이상 협력단 직원 3명 이내
 - 3. 외부위원: 협력단이 관리하는 위원 후보군(POOL) 내에서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봉사단 또는 자문단 사업 운영·관리 경험을 가진 기관 간부 또는 대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의사,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봉사단 또는 자문단 사업 운영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사람 중 3명 이내.
 - 4. 간사: 소관부서장 또는 부의된 해당 안건을 담당하는 봉사단원 복무 관리 직원
 -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내부위원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
 - ③ 협력단은 심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보안 유지 필요성에 따라 심의 안건을 사 전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협력단에 별지 제34-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34-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봉사단원의 복무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봉사단원의 복무 및 규정 위반 판정과 제반 조치에 관한 사항
- 2. 기타 봉사단원의 복무 관리 조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⑥ 「위임전결지침」에 따라 최초 심의위원회는 해외사무소장에게 위임되며,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해외사무소에서 심의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부 소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위원장 : 해외사무소장
- 2. 위원 : 필요시 위원장이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내외부 위원 지명
- ⑦ 간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되,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정한다.
- ⑧ 제6항의 경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제3호에 따른 외부위원은 위원 후보군(POOL)에서 일정 기한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09., 2025.01.02.]

- 제32조의2(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01.02.>
 -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심의대상 봉사단원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과 관련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3. 위원이 심의대상 봉사단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4. 위원이 심의대상 봉사단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5.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이유로 소속기관의 징계를 받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6. 위원이 국무조정실ㆍ기획재정부ㆍ외교부 공무원인 경우
 - 7.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봉사단원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피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2.〉
 - ③ 내·외부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사유를 확인하는 즉시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5.01.02.〉

[본조신설 2019.12.09.]

- 제32조의3(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을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안건 등의 공개에 따라 이해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삭제 <2021.11.23.>
- ④ 삭제 <2021.11.23.>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1. 회의일시 · 장소 및 안건
-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 3. 심의 대상, 발언 요지, 의결 내용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력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국가 안전보장·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병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4.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방법 및 운영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심의의 결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⑧ 성비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심의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⑨ 성비위인 경우는 해외봉사단 성비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09.] [전문개정 2025.01.02.]

- **제33조(심의위원회 의결요구의 사유)** 봉사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해외사무소장 등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1.11.23., 2025.01.02.>
 - 1. 제반 규정의 위반 및 의무 불이행
 - 2. 협력단 또는 재외공관의 지시거부 〈개정 2021.11.23.〉
 - 3. 폭력, 폭언, 기물 파손, 성비위, 절도, 도박, 활동 지역 무단이탈 등 규정 및 이세칙이 정한 서약서,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나 근무 불성실 <개정 2025.01.02.>
 - 4. 대한민국 및 협력단의 명예 및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력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 6.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질병·상해 후속 조치 등) <신설 2021.11.23.> [제목개정 2021.11.23.]
- 제34조(심의위원회 양정의 기준) ①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1. 주의: 경고 사유에 미치지는 아니하나 제 규정과 봉사단원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 2. 경고: 중대한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동시에 계속 봉사단원으로 활동을 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자격상실(계약해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어 대한민국과 협력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행위, 현지 부적응, 단원 및 현지 주민 간 불화 유발, 건강 이상 등 봉사단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시킬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기타 : 봉사단원의 복무 관련 의결 요구의 사유가 있으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양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해외사무소장 등은 봉사단원이 행한 행위가 주의 사유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일 때 별지 제18-1호 서식으로 주의를 촉구할 수 있으며, 처분 내역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후 동일 행위 발생 시 심의위원회 의결 요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를 2회 받은 봉사단원은 봉사단원 자격이 상실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결 요구 사유가 성비위와 관련된 것인 경우는 「해외봉사단 성비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따른다.

[제목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25.01.02.]

- 제35조(심의위원회 의결) ① 봉사단원이 제33조에 해당하는 의결 요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심의위원회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결 요구는 해외사무소장 등이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 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해당 봉사단원의 진술서와 별지 제16-1호 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결요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심의 위원회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의결한다.
 - ③ 해당 봉사단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진술서를 제출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여 제재조치 의결을 할 수 있다.
 - ④ 제34조제3항에 따른 봉사단원 자격상실은 두 번째 경고를 의결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하다.
 - ⑤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별지 제16-2호 서식의심의위원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목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25.01.02.]

- 제36조(심의위원회 집행) ① 심의위원회에서 봉사단원에게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 호에 해당하는 양정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봉사단원에게 별지 제18-3호 서식의 심의 위원회 결과통지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봉사단원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이와 함께 즉시 귀국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제34조제2항에 따라 주의를 촉구 할 때에는 해당 봉사단원에게 별지 제18-1호 서

식의 주의 촉구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봉사단원 자격상실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봉사단원은 물론 관할 재외공관과 전 봉사단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주지시킬 수 있다.
- ④ 제13조의2의 징계 기록은 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합산되어 제재집행 시 반영될 수 있다.
- ⑤ 삭제 <2019.12.20.>

[제목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25.01.02.]

- 제37조(심의위원회 재심) ① 주의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봉사단원이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봉사단원은 재심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제1차 처분에 따라야 한다.
 - ③ 봉사단원이 재심을 요청한 경우 재심은 그 제재조치의 양정을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 ④ 재심의 절차 내지 처분,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내지 제36조를 준용한다.
 - ⑤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봉사단원이 재심을 요청한 경우의 재심은 협력단 본부에서 실시한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관련된 복무 관리 심의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 ⑦ 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봉사단원이 성비위 사건의 최초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사건 조사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재심이 허용된다.

[제목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25.01.02.]

제7장 경비지급 및 활동지원

제38조 삭제 〈2021.11.23.〉

제38조의2 삭제 <2021.11.23.>

- 제39조(왕복항공료) ① 협력단은 규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봉사단원의 파견, 활동 종료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계약해지로 인한 귀국 시에는 순로에 의한 최단거리 노선의 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봉사단원 자격상실 및 봉사단원 본인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한 귀국 시에는 별표 10에 따른 항공권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삭제 <2016.05.03.>

[전문개정 2025.01.02.]

제39조의2(출국자 통보) 교육원은 교육수료자 명단 및 출국일정을 파견국 해외사무소 등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03.]

- 제39조의3(출국지원) ① 협력단은 국내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관용여권 및 비자 발급업 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협력단은 공항 출영 등 파견국까지의 출국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해당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5.03.] [전문개정 2025.01.02.]

- 제40조(준비금) ① 협력단은 규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사단원의 출국 준비 및 봉사활동 종료 후 귀국 준비를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각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출국포기자는 기 수령한 출국준비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2., 2016.05.03., 2025.01.0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귀국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03.02.>
 - 1. 제24조제1항의 일시귀국 기간 또는 대피로 인한 대기기간 중 봉사활동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정 2021.11.23., 2025.01.02.>
 - 2. 규정 제19조(동조제3호 중 봉사단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은 규정 제18조에 따른 제재조치 결과 경고를 받은 봉사 단원에게는 별표 3에 정한 귀국준비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9.06.03.〉 〈개정 2025.01.02.〉
- 제41조(현지 정착비) ① 협력단은 규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현지교육을 마치고 해당 임지로 부임한 봉사단원의 원활한 현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을 현지 정착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4.25., 2018.12.28., 2025.01.0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시에는 현지 정착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42조(현지 생활비) ① 협력단은 규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봉사단원이 현지교육을 마치고 해당 임지에 부임한 날로부터 봉사활동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봉사단원에게 현지 생활비로 지급한다. 다만, 봉사단원이 일시귀국 또는 본국을 포함한 제3국 대피 시 최대 60일까지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33조 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단원계약이 해지된 경우, 협력단은 계약해지일 이 속한 달의 현지 생활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③ 현지 생활비는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3개월분까지를 선지급할 수 있다.
 - ④ 시니어단원의 현지 생활비는 일반단원 현지 생활비 월액의 2배를 지급한다. 다만, 별표 3 귀국 준비금 및 화물탁송료와 별표 4 현지 정착비는 일반단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01.02.]

제43조(주거비) ① 협력단은 규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봉사단원이 현지교육을 마치고 해당 임지에 부임한 날로부터 봉사활동을 마치고 파견국을 출발하는 날까

- 지 봉사단원에게 별표 6에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주거비를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단, 드림봉사단은 동성 2인 이상 공동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1인 초과 시마다 별표 6에서 정하는 금액의 50% 이내를 실비 지급하며, 단원 중 동성이 1인일 경우에는 일반단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② 제33조 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 ③ 시니어단원의 주거비는 일반단원의 주거비 월액의 1.5배 이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협력단은 봉사단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1. 봉사단원이 임시주거지(상용 숙박시설 포함)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1일 지급 상한 액의 50% 범위에서 총 활동 기간중 최대 30일까지 추가 지원
 - 2. 봉사단원 파견국 또는 파견지역의 급격한 물가상승, 단기 임차 등으로 인해 제1항에 따른 주거비로 봉사단원 주거지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주거지 계약시 1개월 지급 상한액의 50% 이내에서 추가 지원
- ⑤ 제4항제2호의 경우 해외사무소는 합당한 근거를 통해 주거비 상향액 조정을 본부에 요청하며, 본부는 해당 사항 검토 후 상한액 조정 기간, 상한 조정액을 명시하여 해외사무소에 안내한다.
- ⑥ 현지 주거비는 현지사정 등을 고려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1.02.]
- 제44조(국내정착지원금(커리어적립금)) ① 협력단은 규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봉사단원이 활동을 종료하고 귀국보고를 완료한 경우 봉사단원의 파견기간만큼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을 국내정착지원금(커리어적립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협력단의 예산, 봉사단원의 고용 혹은 경제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범위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봉사단원이 규정 제19조(봉사단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별표 10에서 정하는 금액을 국내정착지원금(커리어적립금)으로 지급한다.
 - ③ 제19조2에 따라 조기귀국한 경우, 협력단은 조기귀국일이 속한 달의 국내정착지원금(커리어적립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25.01.02.]

- 제44조의2(화물탁송료) ① 협력단은 규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봉사단원이 활동을 종료하고 귀국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화물탁송료로 지급할수 있다.
 - 1. <삭제 2025.01.02.>
 - 2. <삭제 2025.01.02.>
 - ② 봉사단원이 규정 제19조(봉사단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에 따라 계약이해지된 경우에는 별표 10에서 정하는 금액을 화물탁송료로 지급한다.
 - ③ 일시귀국 중 계약이 해지되면 해외사무소는 봉사단원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잔여 개

- 인 물품을 정리할 수 있으며, 최대 항공화물탁송 50kg의 화물탁송료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규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봉사단원이 파견국으로 출국할 때에는 항공화물탁송 50Kg 또는 해당 항공사의 지원 수화물 개수를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1.02.]

- 제45조(현장사업 및 협력활동비 지원) ① 협력단은 규정 제22조에 따라 현장사업 및 협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장사업 경비 신청은 별지 제20호 서식, 협력활동 경비 신청은 별지 제20-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 ② 현장사업 및 협력활동 시기, 지원 형태, 심의 및 선정 방식, 지원 한도는 해당 년도 단원 신규 파견계획 및 기존 활동인원을 기준으로 협력단이 정한다. 〈신설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 **제46조(활동물품지원)** ① 협력단은 규정 제22조에 따라 활동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물품지원 요청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 ② 활동기간 중 1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2회 분할 지원 가능하다. 〈신설 2018.12.28.〉
 - ③ 개인 혹은 팀 단위로 지원이 가능하며 팀 단위로 신청할 경우 1인당 지원경비X인 원수로 지원 가능하다. 〈신설 2018.12.28.〉

제47조 〈삭제 2021.11.23.〉

- 제48조(의료지원 및 재해보상) ① 협력단은 규정 제25조에 따라 교육생 및 봉사단원에 대하여 별표 9와 같이 의료 및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며, 구체적인 보장내역은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05.03., 2018.12.28.>
 - ② 협력단은 제1항에서 보상하는 항목에 대한 교육생 및 봉사단원의 자기부담금을 교육(계약) 기간 내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5.03.>
 - ③ 협력단은 국내교육 일정을 확정한 다음 별표 16 예방접종표에 따른 의료기관 예방접종을 예약하고 이를 교육생에게 안내한다. 〈신설 2016.05.03.〉 〈개정 2025.01.02.〉
- ④ 단, 국내교육의 보험 적용 기간은 합숙교육 기간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1.23.〉 [제목변경 2016.05.03.]
- 제49조(파견국 내 출장비) 협력단은 봉사단원이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파견국 내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18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09.]

제49조의2(숙박바우처 지원) 협력단은 해외봉사단파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봉사 단원에게 숙박바우처 또는 임시숙박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1.02.〉 [본조신설 2024.04.04.]

부칙<2006.12.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총재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활동 중인 시니어단원에 대한 가계보조비는 구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해외봉사단현지평가회의기준」,「해외봉사단단신부임및가 족초청기준」,「해외봉사단현지적응훈련기준」,「해외봉사단차량운영기준」,「해외 봉사단제재조치기준」,「해외봉사단근무지및거주지변경기준」,「해외봉사단겸직제 한기준」,「해외봉사단의료비기준」,「해외봉사단유숙소설치및운영에관한기준」은 폐지한다.

부칙<2008.07.0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총재의 승인을 받아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파나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4월 1일,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동티모르, 파키스탄에 관한 사항은 2007년 7월 1일, 세네갈, 피지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7.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2.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09년 1월 7일 이후 지원자에 대하여, 제14조제4항 및 별지 제25호 서식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배우자를 동반하는 시니어단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06.03.>

부칙<2009.03.0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0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2.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 11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06.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6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4.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7 국내정착금지 원' 개정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02.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4.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4.0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43조제4항, '별표 5 현지생활비' 및 '별표 6 단원 주거비 (지급상한액)' 개정사항은 2013년 4월 1일 부터 적용하다.

부칙<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2.0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4.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38조의 2는 2014년 6월 3일,

별표5는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09.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9월 11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05.0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0조, 별표 1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별표5 및 별표6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07.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02.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아래 조항별 해당 일자를 적용한다.

조항	적용일자
제3조(지원서류) 5호 가족동의서	2018년 3월 12일
제3조(지원서류) 7호 범죄·수사경력회보서	2018년 5월 21일
제7조(신용조회 등)	2010년 3월 21월
제8조(신체검사)	2018년 11월 13일
제11조(국내교육)	
제11조의2(국내교육 내용)	
제11조의5(국내교육 강사의 운용)	
제11조의6(국내교육 지원내역)	
제11조의9(국내교육 평가)	
제11조의10(국내교육의 중지)	2018년 10월 4일
제11조의11(교육생 포상)	
제13조(교육위원회)	
제13조의2(교육위원회 양정의 기준)	
제13조의3(교육위원회 의결 및 집행)	
제13조의4(교육위원회 재심)	

제14조(계약체결) 제42조(현지생활비)
제43조(주거비) 1항(드림봉사단 관련) 2016년 12월 28 제44조(국내정착지원금(커리어적립금)) 2018년 5월 1일 별표1(해외봉사단 서류심사 기준) 2018년 10월 49 별표3(출·귀국 준비금) - 귀국준비금
제44조(국내정착지원금(커리어적립금)) 2018년 5월 1일 별표1(해외봉사단 서류심사 기준) 2018년 10월 49 별표3(출·귀국 준비금) - 귀국준비금
별표1(해외봉사단 서류심사 기준) 2018년 10월 49 별표3(출·귀국 준비금) - 귀국준비금
별표3(출·귀국 준비금) - 귀국준비금
변표시(현지 저차비) 9018년 1월 1일
2010 U 1 E 1 E
별표5(현지 생활비)
별표7(국내정착지원금(커리어적립금)) 2018년 5월 1일
별표10(중도 계약해지 단원 경비지급기준)
별표11(강사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2018년 10월 49
별표11(강사료 등 지급기준) 5. 강사여비(강사 교통비・식비 지급기준) 2018년 5월 21억
별표14(지원물품 품목) 2018년 10월 49
별표16(예방접종표) 2010년 10월 41
별지1호(지원서) 2016년 3월 149
별지2-1호(가족 동의서) 2018년 3월 129
별지2-3호(질병 관리 서약서) 2018년 11월 13
별지3-1호(국내교육 참가신청서)
별지3-2호(국내교육 성실이행 서약서) 2018년 10월 49
별지4호(월드프렌즈 봉사단원 파견계약서)
별지22호(봉사단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2018년 11월 13
별지28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강사용))
별지29호(교육위원회 진술서)
별지30호(교육위원회 의결요구서) 2018년 10월 49
별지31호(교육위원회 의결서) 2018년 10월 45
별지32호(교육위원회 결과통지서)
별지33호(교육위원회 재심 청구서)

부칙<2019.06.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0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5.0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0.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0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7.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1.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4.0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5 및 별표6의 개정사항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01.0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일시귀국), 제25조(휴가), 제44조의2(화물탁송료)는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세칙이 시행되기 이전 1개월 이내에 선발된 프로젝트 봉사단원은 제14조(계약체결)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해외봉사단 서류심사 기준

<개정 2008.11.11, 2009.02.06., 2009.03.02., 2009.11.25, 2010.11.26., 2012.04.25., 2013.04.04., 2014.11.21. 2016.05.03., 2018.12.28., 2019.12.09., 2019.12.31., 2024.01.12., 2025.01.02.>

해외봉사단 서류심사 기준 (제4조 관련)

항목	심사 기준	배점
	ㅇ 전공/유사학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30
학력	ㅇ 전공/유사학과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 또는 학위 소지자	
	전공/유사학과 대학교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23
	전공/유사학과 석사 3학기 이상 또는 박사 재학 중인 자	
	ㅇ 전공/유사학과 대학교 2학년 이하 재학 중인 자	
	전공/유사학과 전문대 1학년 재학 중인 자	18
(30점)	일반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ㅇ 전공/유사 고등학교 졸업자	13
	일반학과 전문학사 이상 재학 중인 자 ㅇ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8
	· · · · · · · · · · · · · · · · · · ·	0
	※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는 졸업자로 간주	
	※ 분야별 전공/유사/일반학과 리스트는 선발계획 수립 시 별도	작성
	[교육.문화 분야]	
	o 1급 정교사(응시직종), 태권도 4단 이상	30
	ㅇ 2급 정교사(응시직종), 1급 정교사(유사관련학과 전공직종)	25
	ㅇ 2급 준교사(응시직종), 2급 정교사(유사관련학과 전공직종)	20
	ㅇ 2급 정교사 이상(비전공직종), 한국어교원 3급, 대학부설 한	15
	국어교사 양성과정 120시간 이상 수료자(한국어교육직종)	
	[기술.직훈 분야]	
	o 기술사(응시직종), 기능장	30
자격증	o 기사(응시직종), 컴퓨터 국제자격증(MCSE, OCP, SCJP)	25
(30점)	o 산업기사(응시직종), 컴퓨터 관련 민간단체 자격증(1급)	20
	o 기능사(응시직종)	15
	[농림.수산 분야]	
	ㅇ 기술사(응시직종), 기능장, 수의사	30
	ㅇ 기사(응시직종)	25
	o 산업기사(응시직종)	20
	o 기능사(응시직종)	15
	[간호.보건 분야]	
	o 기술사(응시직종), 기능장	30

항목	심사 기준	배점
	o 기사(응시직종),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위생사	25
	o 산업기사(응시직종)	20
	ㅇ 기능사(응시직종)	15
	※ 필수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자격증 미소지시 서류심시	나 불합
	격처리	
	※ 동일한 배점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다수 보유한 경우 자격증	하나에
	만 점수 부여	
	※ 분야별 자격증 배점은 연간선발계획 수립 시 별도 작성	
	[일반단원]	
	ㅇ 응시직종 해당경력 10년 이상	40
경력	ㅇ 응시직종 해당경력 7년 이상	35
(40점)	ㅇ 응시직종 해당경력 5년 이상	30
	ㅇ 응시직종 해당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25
	ㅇ 응시직종 해당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20
	ㅇ 응시직종 해당경력 6개월 이상 1년 미만	15

[별표 1-1] 모집선발 면접 지원자 면접료(여비교통비)

〈신설 2020.05.04.〉

모집선발 면접 지원자 면접료 (제5조 관련)

면접료(여비교통비)(1일)	30,000원
----------------	---------

[별표 1-2] 서류심사 불합격 조건 <신설 2024.01.12.> <개정 2025.01.02.>

구분	상세내용		불합격 기준
1. 과거 현지활동 중지 또는 평가 저 조자	중도계약해지	질병 또는 부상 외 개인사유 일체 (가족 병간호, 현지 부적응, 경조사, 취업 및 복직 등)	불합격 ※ 3년 소멸시효 적용 (최종 계약해지일로부터 신규지원 접수마감일까 지)
·	징계	자격상실(계약해지)	불합격
	활동 평가	미흡, 매우 미흡	불합격
2 7171 711170	입교 포기	질병 또는 부상 외 개인사유 일체 (가족 병간호, 가족반대, 신 변정리 불가 등 개인사유 일체)	2회 누적 시, 불합격 (2024. 1.1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 ※ 시효 없음
2. 과거 국내교육 시 중도 퇴교한 자	교육 중도포기 또는 출국포기	질병 또는 부상 외 개인사유 일체 (가족 병간호, 가족반대, 신 변정리 불가 등 개인사유 일체)	2회 누적 시, 불합격 (2024. 1.1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 ※ 시효 없음
	교육 중 강제 퇴교 ※ 동 시행세칙 제13조의 2 1항 3호 관련		불합격
삭제			
3. 지원서를 불성 실하게 작성한 자	지원서 불성실	지원서 항목 미작성, 비속어 사용, 봉사단 사업과 무관한 문장 나열, 문장·단어 단순 반복 등	불합격
	지원서 영문 기술		불합격 ※ 고유명사 영문기술 제외
4. 기타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	필수 자격증 미소지(해당직종에 한함), 과거 활동평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불합격

[※] 질병 또는 부상 판단 기준 : 단원이 KOICA 위탁 전문 의료기관의 한국 내 치료 판단 에 따라 일시귀국한 후 ①승인 기간 내 활동 복귀 불가 또는 ② 질병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된 경우

[별표 3] 출ㆍ귀국 준비금 및 귀국 화물탁송료

〈개정 2019.12.20., 2025.01.02.〉

출·귀국 준비금 (제40조 관련)

출국 준비금(1회)	500,000원	
귀국 준비금(1회)	현지생활비 1월분	

[※] 해외봉사단파견규정 시행세칙 제40조제3항에 의해 제재조치 결과 경고를 받은 경우, 귀국준비금은 반액을 지급한다.

귀국 화물탁송료 (제40조의2 관련)

귀국 화물탁송료(1회)	현지생활비 1월분
--------------	-----------

[별표 4] 현지 정착비

현지 정착비 (제41조 관련)

(단위: US\$)

현지 정착비 현지생활비 1월분

[별표 5] 현지 생활비

<개정 2008.7.4, 2011.7.1, 2013.04.04., 2014.11.21., 2016.05.03., 2017.02.15., 2018.12.28., 2019.12.31., 2024.04.04.>

현지 생활비 (제42조 관련)

(단위: US\$/월)

지역	국가	현지 생활비	지역	국가	현지 생활비
아시아	네팔	600	아프리카	우간다	620
아시아	동티모르	700	아프리카	이집트	630
아시아	라오스	505	아프리카	카메룬	680
아시아	말레이시아	545	아프리카	케냐	550
아시아	몽골	550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640
아시아	미얀마	700	아프리카	탄자니아	650
아시아	방글라데시	570	아프리카	튀니지	700
아시아	베트남	530	중남미	과테말라	530
아시아	부탄	550	중남미	니카라과	570
아시아	솔로몬군도	540	중남미	도미니카공화국	650
아시아	스리랑카	550	중남미	벨리즈	640
아시아	인도네시아	540	중남미	볼리비아	580
아시아	캄보디아	590	중남미	에콰도르	600
아시아	태국	580	중남미	엘살바도르	630
아시아	파푸아뉴기니	920	중남미	온두라스	550
아시아	피지	630	중남미	코스타리카	690
아시아	필리핀	600	중남미	콜롬비아	660
아프리카	가나	690	중남미	파라과이	530
아프리카	르완다	700	중남미	페루	660
아프리카	모로코	630	중동	요르단	700
아프리카	세네갈	700	중동	우즈베키스탄	700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700	중동	키르기스스탄	650

[※] 현지생활비는 봉사단원이 생활 및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및 물품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별표 6] 단원 주거비 (지급 상한액)

<개정 2008.7.4, 2011.7.1, 2013.04.04., 2014.04.22, 2014.11.21., 2016.05.03. 2016.07.21., 2017.02.15., 2018.12.28., 2019.12.31., 2022.12.06., 2024.04.04.>

단원 주거비 (지급 상한액) (제43조 관련)

가. 미불화 지급국 <개정 2013.04.04., 2014.04.22., 2018.12.28., 2024.04.04.> (단위: USS/월)

파견국	주거비 상한액
네팔	
- 도시 (카트만두)	290
- 특정 (포카라, 치트완, 바글룽)	240
- 기타	200
동티모르	
- 도시	700
- 기타	700
라오스	
- 도시 (사바나켓, 팍세)	500
- 특정 (루앙프라방)	550
- 기타	400
몽골	
- 도시	700
- 기타	550
미얀마	540
방글라데시	
- 도시 (다카, 치타공, 실렛, 콕스바잘)	600
- 기타	230
베트남	
- 도시 (하노이시, 호치민시, 하이퐁시, 다낭시, 달랏시, 후에시, 빙 시, 하롱시, 비엔호아시(동나이), 뀌년시, 나짱)	420
- 기타	330
솔로몬제도	1,000
스리랑카	
- 도시	312
- 기타	264
인도네시아	
- 도시	320
- 특정 (자카르타)	420
- 기타	280

파견국	주거비 상한액
말레이시아	
	660
- 기타	420
부탄	120
구현 - 도시 (딤프)	315
- 특정 (붐탕, 파로, 추카, 몽갈, 타시강, 프나카, 원디)	285
- 기타	225
캄보디아	
- 도시 (프놈펜, 시엠립, 바탐방, 꺼꽁, 시하누크빌, 깜뽓)	450
- 기타	390
파푸아뉴기니	
- 도시	1,600
- 기타	1,000
필리핀	,
르니 년 - 도시	480
- 고시 - 기타	310
	310
가나	
- 도시 (주재국 내 9개 주도)	600
- 특정 (아크라)	800
- 기타	450
르완다	
- 도시	770
- 기타	480
에티오피아	
- 도시	710
- 특정 (아디스아바바)	740
- 기타	560
우간다	
- 도시	630
- 도시 - 기타	400
	400
이집트	550
- 도시 (카이로, 포트사이드, 알렉산드리아)	550
- 기타	450
탄자니아	
- 도시	450
- 특정 (다레살람)	650
- 기타	300
케냐	
- 도시	600
 - 기타	200
1 1	

파견국	주거비 상한액
과테말라	
- 도시	310
- 기타	200
도미니카(공)	
- 도시 (산토도밍고)	437
- 특정 (이구웨이, 사마나, 라베가, 쁘에르또 쁠라따, 산 프란시스코,	375
데 마꼬리스, 산 후안, 라 로마나)	
- 기타	337
불리비아	
- 도시 (각 주 주도)	420
- 특정 (우유니)	390
- 기타	350
온두라스	
- 도시	400
- 기타	270
에콰도르 -	
- 도시 (키토, 과야킬, 갈라파고스, 쿠엔카, 만타, 로하, 암바토, 이바라)	500
- 기타	350
엘살바도르	
- 도시	510
- 기타	370
콜롬비아	
- 도시 (보고타, 산안드레스, 메데진, 까르따헤나)	640
- 특정 (깔리, 부까라망가, 바랑끼야)	580
- 기타	480
파라 <u>과</u> 이	
- 도시	410
- 기타	324
ᅵ페루	F0.4
- 도시	504
- 기타	420
우즈베키스탄	600
- 도시 (타슈켄트) - 기타	600 500
요르단	300
요트단 - 도시 (암만지역)	600
- 도시 (임인시역) - 기타	490
	430
니카라과 - 도시	400
- 도시 - 기타	270
·/I	210

파견국	주거비 상한액
키르기스스탄	
- 도시	570
- 기타	360
코스타리카	
- 도시	540
- 특정(리베리아)	500
- 기타	430
벨리즈	
- 도시(벨리즈시, 벨모판 시)	660
- 특정(키코커 섬)	1,254
- 기타(그 외)	585

나. 현지화 지급국<개정 2013.04.04., 2016.05.03., 2018.12.28., 2019.12.31., 2024.04.04.>

(단위: 현지화/월)

파견국	주거비 상한액
태국	
- 도시	11,000
- 기타	8,300
피지	
- 도시 (수바, 라미, 나시누, 나우소리)	2,000
- 특정 (난디, 라우토카)	1,700
- 기타	1,300
모로코	
- 도시	3,500
- 특정 (라바트,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살레)	4,500
- 기타	3,500
세네갈	
- 도시	310,000
- 특정 (생루이, 리차르톨, 띠에스, 까올락)	211,000
- 기타	184,000
카메룬	
- 도시	278,000
- 기타	225,000
튀니지	
- 도시	1,400
- 기타	881
코트디부아르	

- 도시	405,000
- 기타	169,890

[별표 7] 국내정착지원금(커리어적립금)

<개정 2011.11.28., 2018.12.28.>

국내정착지원금(커리어적립금) (제44조 관련)

[별표 9] 보험내역

<개정 2012.04.25., 2013.04.04., 2016.05.03., 2018.12.28.>

보험내역 (제48조 관련)

1) 보상내역

적용기간	국내교육 중	파견 중, 부	보임, 귀국 시
		상해에 대한 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보상내역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상금 실손의료비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상금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2) 보상한도액

구분	상해사망	질병사망
국내교육 중	250,000,000원	200,000,000원
파견 중, 부임, 귀국 시	350,000,000원	200,000,000원

[별표 10] 중도 계약해지 단원 경비지급기준

<개정 2013.12.13, 2015.09.11, 2016.05.03., 2018.12.28., 2021.11.23., 2025.01.02.>

중도 계약해지 단원 경비지급기준 (제39조, 40조, 44조, 44조의2 관련)

계약기간 [*] 활동 비율	지원 내역	단원 자격상실	본인 귀책 사유**
	국내정착지원금 (커리어적립금)		미지급
50% 미만	귀 국 준 비 금	미지급	
	귀국화물탁송료	미지급	
	항 공 권	지급	
50% 이상	국내정착지원금 (커리어적립금)	미지급	(국내정착지원금(커리어적립금) 월액 × 현지 활동 개월 수***) × (완료된 현지 활동 개월 수/현지 계약 개월 수)
	귀 국 준 비 금	미지급	미지급
	귀국화물탁송료	미지급	(귀국화물탁송료) × (완료된 현지 활동 개월 수/현지 계약 개월 수)
항 공 권			지급

^{*} 계약연장 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

^{**} 본인 귀책이 아닌 경우: 1) KOICA의 위탁을 받은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단원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으로 일시귀국 후 30일 내로 회복이 되지 않아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2) 성비위 피해자인 경우 등

^{***} 계약해지일이 속한 달은 일할 계산함

[별표 11] <삭제 2025.01.02.>

[별표 12] 〈삭제 2025.01.02.〉

[별표 13] 어학(영어, 현지어)교육 면제 기준

<신설 2016.05.03.> [제목개정 2018.12.28.]

어학(영어, 현지어)교육 면제 기준

(제11조 관련)

항목			면제여부					
	영어	TOEIC S/T	OPIc,OPI	IELTS	TOE (CB		TOEFL (iBT)	
		130이상	IM3이상	7.5이상	233~249이 상		90~100이 상	면제
어학		스페인어	프랑스어		기티	l언어		
(20점)	현지어	프페인이	=8-4	OPIc, OPI			REX	
		DELE B2이상, FLEX 2등급이상	DELF B2이상, FLEX 2등급이상	M3이상 FLEX 2등급이상		(2등급이상	면제	
참고	!사항	2. 상기 언어 없는 언어	어학 점수는 ' 교육 면제기준 의 경우에는 인 ! 인정한 자에	점수 미 선어(영어	보유자 또는 현	또는 지어)경	공인어학 시	험이

[별표 14] 삭제 <2018.12.28.>

[별표 15] 삭제 <2018.12.28.>

[별표 16] 예방접종표

〈신설 2016.05.03.〉 〈개정 2018.12.28., 2019.12.20., 2024.04.04.〉

예방접종표 (제11조의6 관련)

구분	접종 항목
전체 교육생	독감, 파상풍, A형간염, 장티푸스, 공수병
일부 교육생	황열병, 수막구균

o 독감, 파상풍, A형간염, 장티푸스, 공수병은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황열병과 수막구균은 해당국가 파견자에게만 실시하되, 국가별 안전관리 상황에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가. 황열병 예방접종 국가

구분	접종 국가
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리비아,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아프디카	우간다, 이집트, 카메룬, 케냐, 코트디브아르, DR콩고, 탄자니아
중남미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8 급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o 해당 기준은 질병관리본부(KCDC)에 따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질병통제예 방센터(CDC)의 기준에 근거함. 또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요구내용이 변동 될 가능성이 있음
- o 황열은 1회 접종만으로 평생 면역력이 지속됨(세계보건기구(WHO),2016.7.11.)

나. 수막구균 예방접종 국가

구분	접종 국가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리비아, 모로코,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우간다, 이집트, 카메룬, 코트디브아르, DR콩고, 케냐, 탄자니아, 튀니지, 알제리
중동	요르단
오세아니아	피지

[별표 17] 가산점 부여 기준 <개정 2025.01.02.>

[전문개정 2024.01.12.]

7	н	가산점		リコ/ ろりてしつ	
Т	분	서류	면접	비고(증빙자료)	
	차상위계층	5점	5점		
 사회적 배려층	장애인	5점	5점		
* 14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점	5점		
※ 증빙자료는 정부 정	다문화가족	5점	5점		
책에 따라 수시 변	한부모가족	5점	5점		
동 예정이므로, 모집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5점	5점		
기수별 모집 안내문	여성가장	5점	5점		
내 별도 적용 기준	보훈보상대상자	5점	5점		
안내 예정	국가유공자(자녀)	5점	5점		
	자립준비청년 (舊보호종료아동)	5점	5점		
외국어 ※ 최대 5점 이내 가점	영어	3점	-	TOEIC 830~920점 New TEPS 324~393점 TOEFL/IBT 95~107점 G-TELP(레벨 2) 80~92점	
인정, 중복가점도 5 점 초과 불가 · (예시) 영어 3점 + 프 랑스어 3점 해당 시,	※ 인정: TOEIC, New TEPS, TOEFL/IBT, G-TELP(level 2)	5점	-	TOEIC 921~990점 New TEPS 394~600점 TOEFL/IBT 108~120점 G-TELP(레벨 2) 93~99점	
총점 5점 가점부여	프랑스어	3점	_	DELF B1 FLEX 2A, 2B	
※ 성적 유효기간: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유 효기간이 남아있는	※ 인정: DALF, DELF, FLEX	5점	-	DALF 모두 인정 DELF B2 이상 FLEX 1A, 1B, 1C	
국내 인정 정기시험 성적	스페인어	3점	-	DELE B1 FLEX 2A, 2B	
※ 사유를 불문하고 진	※ 인정: DELE, FLEX	5점	-	DELE B2 이상 FLEX 1A, 1B, 1C	
위여부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정불가	러시아어	3점	-	TORFL 1단계 FLEX 2A, 2B	
	※ 인정: TORFL, FLEX	5점	_	TORFL 2, 3, 4단계 FLEX 1A, 1B, 1C	

_	분	가선	산점	비그/즈비지리)	
т	프	서류	면접	비고(증빙자료)	
	아랍어	3점	-	이랍어 전공 학사	
	※ 인정: 아랍어 전공	5점	_	이랍어 전공 석사 이상	
	사회봉사 200시간	5점	-	관련증빙 제출	
	해외봉사 3개월 이상	5점	-	관련증빙 제출	
기타 경력 ※ 가점 상한 없음	ODA 일반자격증 취득자	5점	-	관련증빙 제출	
	ODA교육원 교육 수료증 소지자	2점	-	관련증빙 제출	
학점인정제 대학 추천	학점인정 MOU 체결 대 학 추천 인재	-	5점		

[별표 18] 봉사단원 파견국 내 출장비 지급기준

〈신설 2019.12.09.〉 <개정 2021.11.23. 2024.04.04〉

구 분	지급액
일 비	3급 이하 직원의 50% 정액 지급 (당일출장의 경우 일비 미지급)
식 비	3급 이하 직원의 100% 내 공동 실비 정산 또는 정액 지급 (당일출장의 경우 공동 실비 정산 또는 50% 정액 지급)
숙박비	3급 이하 직원 실비상한액의 50% 내 공동 실비 정산 또는 정액 지급 ※ 다만, 숙박바우처 활용 가능 시 지급 불가
교통비	소요 경비 실비 정산 (▲지역 간 이동 운임 지원, ▲육로 이동 6시간 이상인 경우 항공(이코노미석) 이용 가능)

[별지 제1호] 지원서

<개정 2009.11.25., 2010.11.26., 2015.09.11. 2016.05.03., 2018.12.28., 2021.11.23.>

					접수번호			
		지원국가						
		지원분야						
		지원직종						
<u> </u>	한 글				생님	년월일 -		
① 성 명	한 문							
	영 문				성 별	남·여		
2	주민등록				(Tel:)		
연락처	현거주지				(Tel:)		
	직장명					직 업		
3	소재지					Э Н		
근무처	소속 및 직위							
④ 최종학력	년	월	(대)학교	대학	과(졸업·재학·충	가(졸업·재학·중퇴·수료)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⑤ 가족사항								
			1	I				

6	영어		상 중	ਨੋਂ	}			취대	٦]	특	-7]
외국어			상 중 ㅎ			7					
(특수외국어			상 중 ㅎ			취미					
포함)			상 중	ਨੋਂ	ŀ						
⑧주요 병	력 및										
신체이상	부위										
9 봉사단체 활동유무 (국내외)	단체 및 기간, 업무	1									
10											
자격 및	자격·민	변허증	거증 취득일시				등급		발행처		
면허											
	직장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특기사항		항
경력사항											
		_1 =	-		41.		7 11-1-	_			,
12		전공	<u>/</u>		입경	학년도	졸업년	도	;	소재.	지
학력											
(3) 병역사항	역종	군별	병과	계	급	군번	주특기	I	무 간	п	필
위 기재사항은	은 사실	과 틀	림이 없	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원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 공 동의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

1. 해외봉사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과 그로 인한 영향 또는 변화는 무 엇입니까?
3. 지원직종과 관련하여 다른 지원자와 차별되는 자신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4. 지원직종과 관련있는 교육, 훈련, 연구 등의 경험과 파견국에서 그 경험의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5. 해외봉사활동 기간 동안 반드시 해보고 싶은 일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해외봉사활동을 마친 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별지 제2-1호] 보호자 동의서

<신설 2010.06.29.> <개정 2012.04.25., 2013.04.04., 2018.12.28., 2021.10.22.> [제목개정 2018.12.28., 2021.10.22.]

보호자 동의서

■성 명:

■지 원 직 종 :

본인은 상기인이 금번 해외봉사단원으로 선발될 경우, 소정의 국내교육 수료 후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관계:)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해외 봉사활동 수행은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 요한바, 보호자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호자의 범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 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 봉사단 선발전형 중이나 합격 후(출국 전에 한함) 동의서 위조 사실 발 견 또는 동의인이 동의사실을 취소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나 불합격 처 리됩니다.

[별지 제2-2호] 질병ㆍ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개정 2010.6.29, 2013.04.04., 2014.11.21., 2015.09.11., 2021.10.22., 2025.01.02.> [제목개정 2015.09.11., 2021.10.22., 2025.01.02.]

질병·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L질병·	병력	확인]	
------	----	-----	--

- 1. 본인은 특이질병이 없습니다.()
- 3. 기타 특이사항(정신과 약을 포함한 복용약 등 기재):
- 4. 상기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고지 질병·병력이 발견될 시 치료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 1.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2. 상기 확인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취소 또는 단원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3호] 질병 관리 서약서

〈신설 2018.12.28.〉 〈개정 2025.01.02.〉

질병 관리 서약서

성명: 생년월일:

파견국: 파견분야:

위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질병명)* (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봉사활동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검사수치가 정상적·안정적이므로, *(파견 분야)* 단원으로 파견하여 성실히 복무를 수행한다.
- 2. 본인은 *(질병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질병 관리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며, *(질병명)* 관련하여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진단, 처방 및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협력단에 제공한다.
- 3. 고지한 *(질병명)*의 증상악화로 현지 파견활동이 어렵다는 의료진 권고가 있을 경우, 현지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본국으로 귀화(계약해지) 한다.
- 4. 파견 전 가지고 있는 (질병명)에 따른 보험 보상이 제한적임을 인지하고 (질병명)관련 의료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 5. 상기 명시된 질병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중증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본인 귀책"으로 간주하며 협력단은 책임지지 않음을 숙지하다.
- 6. 동 서약에 따른 계약해지 및 의료비 개인부담과 관련해 협력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보호자 (인)

[별지 제3-1호] 국내교육 참가신청서

<신설 2008.11.11.> <개정 2012.04.25., 2015.09.11., 2018.12.28.>

국내교육 참가신청서

ㅇ지원자 정보 (지원서정보 연동) ㅇ파견국 (지원서정보 연동) ㅇ일반/시니어 구분 (지원서정보 연동) 0 참가교육 (지원서정보 연동) ㅇ교육기간 (지원서정보 연동) o파견직종 (지원서정보 연동) ㅇ여권정보(선택입력) ㅇ성별 (필수입력) ㅇ거주지 주소 (필수입력) ㅇ은행계좌 정보 (필수입력) ㅇ이메일 주소 (필수입력) ㅇ국내교육 참가여부 (필수입력) - 교육면제신청, 포기사유 별도 기재 o 연락처(휴대전화/비상전화) (필수입력) o 초상권 사용 동의 (필수입력) ○운동복 치수 : 85(), 90(), 95(), 100(), 105(), 110()

[별지 제3-2호] 국내교육 성실이행 서약서

〈개정 2012.04.25., 2015.09.11., 2018.12.28., 2019.12.20., 2021.11.23.〉

국내교육 성실이행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파견국: 파견직종:

상기 본인은 월드프렌즈 해외봉사단 예비단원의 신분으로서 해외봉사단원으로 최종 파견되기 전에 실시하는 국내교육에 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 다 음 -

- 1. 본인은 월드프렌즈 해외봉사단 예비단원 자격으로 국내교육에 참가함을 인지하며, 금 번 국내교육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 2.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정한 국내교육 제반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교육기간 중 교육원장 및 직원의 지시 및 감독에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 3. 본인은 교육기간 중 제반규정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예비단원 교육평가기준에 의한 일련의 제재조치에 따르겠습니다.
- 4. 본인은 교육 종료 후 교육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해외봉사단원으로 갖추어야 할 일정자 격이 미달될 경우 최종 파견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5. 나는 동료 교육생 및 파견국 주민과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어떠한 성비위 행위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길 시 심의에 의한 제재에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별지 제4호] 월드프렌즈 봉사단원 활동계약서

<개정 2010.06.29., 2010.11.26., 2012.04.25., 2013.04.04., 2013.12.13., 2014.11.21., 2015.09.11., 2018.12.28., 2019.11.20., 2019.12.31., 2021.11.23., 2025.01.02.>
[제목개정 2018.12.28.]

월드프렌즈 봉사단워 활동계약서

(계약번호: 제20 - 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월드프렌즈 봉사단원(이하 "봉사단원"이라 한다)은 특정개발도상국에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됨에 있어 "협력단"의 의무 및 "봉사단원"의 활동내용 및 기간,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단원 봉사활동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단"이 정하는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및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이 동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간 붙임의 계약 책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그 증거로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1. 파견기수 :
- 2. 파견국 :
- 3. 단원구분(계약기간/계약형태/사업): (단원 형태별로 표기)
- 4. 파견직종 :
- 5. 계약기간: 출국일로부터 o년 또는 o년 o월 o일부터 파견종료일까지 *(단원 형태 별로 표기)*
- 6. 파견기간: 출국일로부터 o년 또는 o개월 (단원 형태별로 표기) (단원 형태별로 표기)

붙임: 계약 내용 1부

20 년 월 일

(협력단) (봉사단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인) 성명: (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생년월일:

주소:

계약 내용

월드프렌즈 봉사단원(이하 "봉사단원"이라 한다)은 인종, 민족, 종교 등을 초월하여 자발성· 무보수성·공익성의 원칙에 따라 봉사활동을 통해 국제평화에의 기여, 개발도상국들과의 상호 이해와 협력기반 구축 그리고 인류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파견됨을 인지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정부 간의 협정 또는 파견국 내 봉사단원 소속 기관과의 합의에 근거하여 봉사단원의 파견 활동을 지원, 촉진함과 아울러 일반 국민의이해 및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봉사단원"은 해당국가에 파견됨에 있어, "협력단"의 의무 및 "봉사단원"의 활동 내용 및 기간,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협력단"과 "봉사단원"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단"이 정하는 「해외봉사단원파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 1. "협력단"의 "봉사단원"에 대한 의무
 - 가. "봉사단원"에게 본국과 파견국 간의 왕복항공료, 봉사활동에 필요한 생활비, 국내 정착지원금(커리어적립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내정착지원금(커리어적립금)은 파견 기간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 나. "봉사단원"의 봉사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언과 지도를 행하는 외에, "봉사단 원"의 업무연락을 위하여 파견국에 봉사단원 파견업무 연락관을 둔다.
 - 다. 봉사활동용 자료의 구입 등 봉사단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한다.
 - 라. "봉사단원"의 파견기간 동안 질병·재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필요보험에 가입하여 보상 하도록 하며, 파견국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이나 분쟁의 발발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인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협력단"이 그에 따른 보상을 행한다. 그러나 봉사활동 이외의 재해(봉사활동에 기인하지 아니한 재해나 고의적인 사고 내지는 봉사활동을 떠난 개인 활동 시에 발생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전적으로 "봉사단원"이 책임을 진다.
 - 마. 정기적으로 의료품을 지급하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2. "봉사단원"은 파견국 정부 및 소속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속기관의 업무시간을 준용하여 맡은 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파견기간 및 봉사활동내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협력단", "봉사단원" 및 파견국 소속기관

과의 삼자 협의를 거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봉사단원"의 일반 준수사항

- 가. 봉사활동 계약과 서약 내용을 준수한다.
- 나. 파견국 및 파견국 국민을 비난, 경멸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또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파견지역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 다. 파견국의 법령 및 관습을 준수하며, 정치적, 종교적, 또는 영리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다.
- 라. 대한민국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협력단"의 신용 및 봉사단원 전체의 불명예가 될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마. "협력단"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파견지역을 이탈할 수 없다.
- 바. "협력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 사. "협력단"이 교부한 단원신분증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 아. "봉사단원"은 청렴한 윤리관을 가지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봉사활동 경비를 신청 및 이용함에 있어, 관련 활동 외 집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자. 그 밖의 봉사활동 수행에 있어서 "협력단" 또는 파견국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장의 조언 및 지도에 따른다.

4. "협력단" 의 승인 및 지시

"봉사단원"은 원칙적으로 파견기간 중 파견국을 이탈하거나 본국에 귀국할 수 없으나,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는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파견국 소속기관의 허가와 "협력단"의 사전 승인 및 지시를 받아 이동할 수 있다.

- 가. 활동기간 내에 파견국 내 또는 파견국 이외의 국가로 출장 또는 여행을 하는 경우
- 나. 활동기간 종료 후 본국 귀국 시 통상경로 이외의 귀로 변경을 하는 경우
- 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여 본국에 일시 귀국하는 경우
- 라.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 마. 활동기간 중 소속기관의 변경, 봉사활동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 바. 기타 "협력단"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봉사활동의 중단

- 가. "봉사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력단"에게 신청하여 "협력단" 및 파견국 소속기관과의 합의를 거쳐 봉사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 1) 제4조의 '다'항 및 '라'항에 따라 일시 귀국한 결과, 다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 2) "봉사단원" 의 봉사활동 기간 중 파견국 사정으로 인하여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나. "협력단"은 "봉사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봉사단원"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중단시키고 귀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2차 피해 방지를위한 격리 및 접근·연락금지 또는 일시귀국을 명하고 엄격한 조사를 거쳐 활동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 1) 본 계약에 명시된 일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부상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봉사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이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경우
- 3) 파견국 소속기관의 판단이나 "협력단"의 판단에 따라 "봉사단원"으로서의 자질 과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 4) 파견국 재외공관장이 본국 송환을 요청하여 온 경우
- 5) "봉사단원"에 대한 복무 관리 심의위원회 의결 요구 사유가 있거나 사건 진상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 다. "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봉사단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봉사단원의 활동태만·봉사활동수행 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 또는 재외공 관장이 활동 종료를 요청한 경우
- 2) 봉사단원이 계약위반 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부상·심신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3) 봉사단원이 국내교육 수료일 기준 60일이 초과하여도 파견 불가하거나, 세칙 제24조 에 따른 일시귀국 승인 기간 또는 세칙 제29조에 따른 대피 후 활동 대기기간이 60일을 초과하거나, 치료 등으로 30일을 초과하여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봉사단원이 현지적응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 5) 봉사단원이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경우
- 6) 기타 봉사단원 활동이 어려운 사유로 복무 관리 심의위원회가 계약 해지를 의결한 경우

6. 파견국에 있어서의 돌발사태

- 가. "협력단"은 "봉사단원"의 파견기간 중 파견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 등 긴급사태로 인하여 "봉사단원"의 봉사활동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그러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봉사단원"에게 파견지역 및 제3국의 안전지대로대피할 것을 명령하거나 본국 귀국을 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나. 파견국에 '가'항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봉사단원"은 "협력단" 및 파견지역 재외공관장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다. "협력단"은 '가'항 또는 '나'항에 따른 "봉사단원" 대기기간을 활동 재개 심사기간으로 두고, "봉사단원"의 안전한 활동 복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다만 활동 재개가 불가한 경우 단원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대기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 "봉사단원"에게 안내한다.
- 라. "봉사단원"의 대기기간이 60일을 초과하여도 여전히 활동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활동 중단 후 60일이 되는 날 단원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봉사단원"의 봉사활동기간이 대기기간 중 종료한 때에는 봉사활동기간이 종료한 날에 "봉사단원"의 봉사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7. 제재조치 등

- 가. "봉사단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견국 정부, 소속기관 또는 "협력단"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협력단"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봉사단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봉사단원"은 "협력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나. "협력단"은 제3조의 일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사단원"에게 주의, 경고 또는 봉사단원 자격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봉사단원"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다. "협력단"이 "봉사단원"에 대하여 "봉사단원"이 관련된 제재조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일시귀국 명령을 내리는 경우 "봉사단원"은 지체없이 귀국하여야 한다.
- 라. 봉사단원의 본인 귀책사유 또는 자격상실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국내정착지원금, 귀국준비금, 화물탁송료 등 경비를 삭감하거나 미지급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세칙 별표 10에 따른다.

8. 저작물 이용 권한 이전 등 <신설 2010.06.29.> <개정 2019.11.20.>

- 가. "봉사단원"은 활동기간 동안 단원계약 및 봉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에 대한 모든 권한이 "협력단"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 나. "봉사단원" 이 위 저작물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단"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보증 및 면책 〈신설 2019.11.20.〉

- 가. "봉사단원"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 1)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
-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
- 나. "봉사단원"은 일체의 저작물과 관련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협력단"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각종 저작물로 인하여 "협력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협력단"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봉사단원"은 그로 인

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신설 2019.11.20.〉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력단"과 "봉사단원"은 제소에 앞서 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이 경우 조정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협력단"의 선택에 따라 소 제기에 따른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소 제기시 "협력단" 주소지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합의관할로하며, 중재에 의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관할로 한다. 후자의 경우 중재판정은확정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11. 활동평가 〈신설 2019.12.31.〉

- 가. "협력단"은 "봉사단원"의 활동을 점검 및 개선하기 위해 현지활동 평가와 봉사단원 개인별 역량 및 성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나. "협력단"은 단원 활동평가 결과를 향후 동 단원의 계약연장과 추후 단원 선발 결정 시 참고 및 반영할 수 있다.

12.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 가. "협력단"은 "봉사단원"의 참여 실적 또는 활동에 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협력단"은 "봉사단원"이 자격상실의 조치를 받을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봉사단원"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자격상실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월드프렌즈 봉사단원 활동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따른다.

[별지 제5-1호] 서약서

〈개정 2016.05.03., 2018.12.28., 2021.11.23., 2025.01.02.〉

서약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원(이하 "봉사단원"이라 한다)으로서 앞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소정의 봉사활동에 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 1. 본인은 "봉사단원" 으로서 자부심과 궁지를 가지고 맡은 바 봉사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겠습니다.
- 2. 본인은 귀 한국국제협력단의 제반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은 파견국 소속기관과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시 및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 3. 본인은 "봉사단원"으로서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소정의 징계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가. 법령·규정·명령 및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나. 한국국제협력단 및 대한민국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파견 사업 전체의 불명예가 될 행위를 하였을 때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견지역 해당기관 및 한국국제협력단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 라. 봉사단원으로 단신부임한 후 현지에서의 결혼 또는 결혼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속기관에서의 봉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 마. 기타 계약서상 "봉사단원"의 일반 준수사항 등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내용을 위 반하였을 때
 - 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파견국의 안전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때
- 4. 본인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해외봉사활동에 임하며 봉사활동 종료에 따른 개인적인 보상, 진로, 취업 등 일체의 혜택을 따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5. 본인은 봉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파견국 및 파견지역에 해가 되는 행위(폭력, 폭언, 파손,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의 성비위 행위, 절도, 도박 등)를 하지 않겠습니다.
- 6. 본인은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의 주요 원칙인 참여, 책무성, 비차별, 역량 강화, 국제인권기준과의 연계 등에 기초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사업활동 지역에서 생명권, 건강권, 노동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권, 평화롭게 살 권리 등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 7. 본인은 "봉사단원" 으로서 활동기간 중 봉사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 금품·향 응 수수 등 부정부패행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봉사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별지 제5-2호] 배우자 동반 안전책임 서약서

〈신설 2009.02.06.〉 〈개정 2013.04.04., 2015.09.11., 2018.12.28., 2025.01.02.〉

배우자 동반 안전책임 서약서

- 1. 본인은 배우자 동반에 따른 체재비, 항공료 등 제경비를 전액 부담한다.
- 2. 본인은 배우자를 위해 긴급의료 및 보안 지원 서비스(한국국제협력단 계약업체 필수)와 해외여행자 보험(한국국제협력단 비 계약업체도 가능)에 가입하고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본 서약서 제출시 위 서비스 및 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국제협력단 에 제출한다.
- 3. 본인은 배우자 현지 체류중 질병, 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와 사후관리를 전적으로 책임 진다.
- 4. 본인은 배우자 외 다른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다.

본인은 배우자를 동반함에 있어 위와 같이 서약하며 상기 사실을 위배할 경우 한국국제 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첨부: 배우자 제보험 가입 증빙 각 1부

[별지 제6호] 단원 신분증

<개정 2010.11.26.> <삭제 2025.01.02.>

[별지 제7호] 현지적응교육 실시 계획서

〈개정 2012.02.28., 2012.04.25.〉

현지적응교육 실시 계획서

- 1. 국가:
- 2. 교육 기간:
- 3. 교육 인원:
- 4. 교육 담당자:
- 5. 총 소요예산:

첨부:

- 1. 현지적응교육 세부일정계획 1부
- 2. 현지적응교육 소요예산 세부내역 1부

[별지 제8-1호] 활동 계획보고서 <삭제 2025.01.02.>

[별지 제8-3호] 활동 결과보고서 〈삭제 2025.01.02.〉

[별지 제8-4호] 인계인수서 <삭제 2025.01.02.>

[별지 제8-5호] 활동 지역조사서 <삭제 2025.01.02.>

[별지 제9-1호] 안전상황 보고서 〈삭제 2025.01.02.〉

[별지 제9-2호] 봉사단원 이동보고서

<신설 2021.11.23.>

이동보고서

파견국	
파견분야	
성명	
파견기간	
소속기관	

1. 이동 일시 : 년 월 일~ 년 월 일

구	분	출 발	도 착
장	소		
예정	시간		
체류	장소	* 숙박 시 작성	
비상 역	연락망		

റ	\triangle	ᅮ	ワス	
/	0	<u> </u>	느스	

- ① 물품 구입(생필품, 활동물품, 식료품 등)
- ② 병원 방문
- ③ 봉사단 파견업무 관련 협의
- ④ 기타 ()

3. 이동 방법

- ① 대중교통(버스, 기차, 항공 등)
- ② 사설 택시
- ③ 기타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1호] 거주지 변경 숭인 신청서

[제목개정 2025.01.02.]

거주지 변경 승인 신청서

성 명	
파견국	
파견일	
직 종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이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거주지	주 소	
1. 연기구시	주거방법	
2. 변경예정 거주지	주 소	
2. 번경예정 기구시	주거방법	
3. 변경사유		
4.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활동 여건 변화	
(주거, 통신연락, 업무	, 교통 등)	
5. 조치사항 또는 지원요	청 사항	

년 월 일 신청자 (인)

주 대사 귀하 또는 해외사무소장 귀하

첨부: 소속기관 승인서 또는 주택임차계약서 1부(영문)

소속기관 변경 신청서

성 명	
파견국	
파견일	
직 종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이 소속(활동)기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초 활동기관	
2. 변경 요청 활동기관	
3. 변경사유	

년 월 일

신청자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일시귀국숭인 신청서

일시귀국승인 신청서

성 명	
파견국	
파견일	
직 종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시귀국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귀						
국						
사						
유						
신]청사항					
신]청시기	부터	까지	()일간	

년 월 일

신청자 (인)

주 대사 귀하 또는 해외사무소장 귀하

첨부:

- l. 소속기관 확인서 1부(영문)
- 2. 관련 증빙서류 일체

[별지 제12호] 파견국 외 휴가 신청서

파견국 외 휴가 신청서

성 명	
파견국	
파견일	
직 종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견국 외 휴가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가국가 및 지역	
2. 휴가기간	
3. 휴가기간 중 연락처(사전 미확정시 휴가 기간 중 통보)	
4. 휴가기간 중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자 (인)

주 대사 귀하 또는 해외사무소장 귀하

첨부: 소속기관 확인서 1부(영문)

[별지 제13호] 봉사활동 계약연장 신청서

〈개정 2010.11.26., 2025.01.02.〉

봉사활동 계약연장 신청서

본인은 해외봉사단원으로서 년 월 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바, 이에 계약기간을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하고자 이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견국:

소속 기관:

파견 직종:

신청자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첨부:

- 1. 소속기관 승인서 1부(영문)
- 2. 현지공관 의견서 1부
- 3. 계약연장 후 활동 계획서 1부
- 4. 현지건강검진결과표 1부

[별지 제14호] 계약해지 신청서

<개정 2015.09.11.> [제목개정 2018.12.28.]

계약해지 신청서

,	성 명				생년월일	
立	·견국				파견분야	
파	견기간	년	월 ~	년 월	人人力力	
희밍	해지일				소속기관	
상기	기 본인은	- 아래와	같은 시	- 유로 단원	계약을 해지하고	그자 합니다.
단						
원						
계						
약						
해						
지						
사						
유						

년 월 일 신청자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5호] 심의위원회 진술서

<개정 2009.06.03.> [제목개정 2018.12.28.]

시이의의히 지수서

심의귀전의 신물시					
성명	파견직종				
파견국	소속기관				
파견일	<u> </u>				
〈진술내·	8>				
	년 월 일 작성자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OOO 해외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16-1호] 심의위원회 의결요구서

<개정 2018.12.28., 2021.11.23.> [제목개정 2018.12.28.]

심의위원회 의결요구서

인 적	① 성 명		② 파 견 국			
사	<u>の 되거지</u> ス		(A) 5] 74 (O)			
항	③ 파견직종		④ 파 견 일			
5						
의						
결						
요						
구						
사						
유						
6						
의						
결						
요						
구						
내						
용						
	위의 사	구에 대해 심의·의격	멸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년	월	일
	7	한국국제협력 (OOO 해외/		-		

심의위원 의견서

위원명		소속기관	
심의안			
검토의견			
	년 월	일 일	
		심의	위원 (인)
	한국국제협력단	<u></u> 이사장	귀 하
	(000 해외	사무소장)	

[별지 제17호] 심의위원회 의결서

<개정 2009.06.03., 2018.12.28., 2021.11.23.> [제목개정 2018.12.28., 2021.11.23.]

심의위원회 의결서

인	① 성 명		② 과	 겨 구			
적	ď íð íð		4 4	신 비			
인 적 사 항	③ 파견직종		4 과	견 일			
5							
의결							
요구							
사항							
(C)							
6							
의결							
내용							
및							
관련							
내규							
		위와 같이 의결	할니다.				
					٥١	۸۱	
				년	월	일	
				6] 6] 7].			(01)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별지 제18-1호] 주의 촉구장

〈개정 2009.06.03., 2021.11.23., 2025.01.02.〉

주의 촉구장

성명	파견국	
파견직종	파견일	

귀하와 관련된 다음 사항은 해외봉사단 명예를 훼손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봉사단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어긋나는 여하한 일도 없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함.

- 지 적 내 용 -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OOO 해외사무소장) [별지 제18-2호] 삭제 <2019.12.20.>

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

인 적	①성당	경	②파견국			
사 항	③파건	결직종	④파견일			
⑤ 조 范	치내역					
6,	사유					
		위	귀하 와 같이 처분되었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OOO 해외사무소장)			
,		•	지)자의 귀국기일: 한) :치가 의결됐을 경우에만 작성			
참 고	참 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제37조 (심의위원회 재심)에 의하여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8-4호] 계약 해지 통지서

〈신설 2025.01.02.〉

계약 해지 통지서

인 적 사 항	①성당	병	②파견국
사 항	③파건	<u>격</u> 직종	④파견일
(S)	나유		
		위와 같	귀하 이 년 월 계약해지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OOO 해외사무소장)

[별지 제19호] 심의위원회 재심 청구서

<개정 2018.12.28., 2021.11.23.> [제목개정 2018.12.28.]

심의위원회 재심 청구서

성명	파견국	
파견직종	파견일	

년 월 일부 복무위반(제재)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 ㅇ 청구 이유:
- ㅇ 요망 사항:
- ㅇ 반증 서류: 별첨

년 월 일 청구인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재심 관련 안내는 **지원서 제출** 당시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 수집에 동의한 연락처로 회신 드립니다. 전화번호, e-mail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회신을 희망하는 연락처가 있는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에 반드시 고지 바랍니다. 미고지에 따른 재심 안내 및 결과 통보 미수신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12.02.28., 2018.12.28.>

현장사업지원비 요청서

국가	
파견일자	
파견분야	
목표 수혜인원(명)	
소속기관(지역)	
단원명	(인)

주 대사 귀하 또는 해외사무소장 귀하

현장사업지원 요약서

1. 사업명	o 국문명: o 영문명:							
2. 사업기간			3.	단원	명/님	분야		
4. 사업규모	∘US\$	(KOICA	: US\$	14	구원	기관: US	5)	
5. 개발목적								
6. 사업목표								
7. 주요사업내용								
	주요 타겟층							
o & -11 _1	목표수혜 인원(명)	남성					여성	
8. 수혜자		장애인	비장애인	소 :	계	장애인	비장애인	소계
	수혜인원 산출기준							
		수 원 기	관				KOICA	
9. 투입내역								
	합계:	US\$				합계: U	S\$	
10. 성과								
11. 요청기관 (활동기관)								

[별지 제20-2호] 협력활동 계획서

<신설 2018.12.28.>

협력활동 계획서

협력활동 계획서

	국 가	
	단원명	
대표	파견일자	
단원	파견분야	
	소속기관(지역)	
켞	· 낚석단원(명)	
목표	- 수혜인원(명)	

주 대사 귀하 또는 해외사무소장 귀하

- 1. 추진배경
- 2. 협력활동 목적 및 기대효과
 - 가. 목적
 - 나. 주요 타겟 수혜자 및 목표 수혜인원

주요 타겟층						
목표수혜 인원(명)	장애인	남성 비장애인	소계	장애인	여성 비장애인	소계
수혜인원 산출기준						

- 3. 활동내용
 - 가. 활동개요 및 구성
 - 나. 세부활동내용 및 일정
 - 다. 주요 참석자(참여단원 포함) 및 참석자별 세부활동사항
- 4. 소요예산(안)
- 5.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6. 예상 사업성과

붙임 :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환율 증빙자료 각 1부. 끝.

봉사활동물품 지원요청서

성 명	
파견국	
파견일	
직 종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 물품지원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요청내역	
2. 요청품목 세부내역	
3. 지원요청 사유	
4. 기대효과	
5. 조치사항	

년 월 일 신청자 (인)

주 대사 귀 하 또는 해외사무소장 귀 하

첨부: 요청품목 세부내역서 1부

[별지 제22호] 한국국제협력단 파견 해외봉사단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신설 2008.11.11.> <개정 2017.12.22., 2018.12.28., 2020.10.19.> [제목개정 2025.01.02.]

한국국제협력단 파견 해외봉사단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 일반결함

-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악성종양 치료 종료 후 5년간 재발이 없으면서, 해당 암 분야 전문의(상급종합병원)의 1년 이내 추적검사가 필요없다는 소견서 미제출 자) 〈개정 2020.10.19.〉
-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 다.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 라. 단독질환으로 정상범위내 관리가 안되는 고혈압(수축기 140mmHg/ 확장기 100mmHg 이상)
-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 2. 비강(鼻腔)・구강・인후기관 계통
 -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구강 · 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 가. 아래턱관절 강직(强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 5. 심장 · 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심부전증(心不全症)
 -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 다.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碍)
 - 라. 동맥류

- 마. 유착성 심낭염
- 바. 관상동맥질환
- 사. 폐성심(肺性心)
-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전염력이 있는 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 B형 간염 건강보균자로 말리리아 발생지역으로 파견 되는 자)

7. 생식비뇨기 계통

- 가. 중증 요실금
-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 (腎疾患)
-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갑상선암 치료 종료 후 3년간 재발이 없으면서, 약물복용으로 갑상선 기능 검사 상 정상이 유지된다는 전문의(상급종합병원)의 소견서 미제출자) <개정 2020.10.19.>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 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 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 능장애 등의 합병증
-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식후 200mg/dL 이상)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 다. 재생불량성 빈혈
 -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 마. 진성적혈구 증가증
 - 바. 백혈병
- 10. 신경계통

-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 2) 외상성 신경질환
 - 3) 말초신경질환
 -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화
 - 6) 뇌전증(脳電症)

11. 사지(四肢)

- 가.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 · 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14. 정신 계통

-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 라.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15. 기타

- 가. 뇌, 심혈관질환 위험도평가 검사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자
- 위험도 평가지표(나이, 유전적인자, 몸무게, 흡연, 혈압, 운동, 당뇨, 혈액 및 영상

검사 등)

- 나. 담석증 및 요로결석 진단자
- 다. 낭종(3cm), 근종(2-3cm이상), 담낭 용종(1cm이상)의 경우 전문의의 (상급종합병원)의 추가 소견서 미제출자 <개정 2020.10.19.>
- 담석증을 진단 받고 5년 이상 무증상인 경우는 제외

[별지 제23호] 면접위원 청렴서약서

<신설 2012.04.25.> <개정 2017.12.22., 2018.02.28., 2025.01.02.>

면접위원 청렴서약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 파견 해외봉사단원 선발 면접위원으로서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인재선발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자각하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본 면접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향응, 뇌물제공 및 수수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 등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 2. 본인은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다.
- 3. 본인은 선발과 관련한 일체의 부정행위 및 청탁, 금품·향응 수수, 추천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외부적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며 이런 상황 발생시, 지체없이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신고한다.
- 4. 청탁 수용, 금품·향응 수수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에 본인이 연루되었을 경우, 향후 면접위원 배제, 관련 법률 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을 서약한다.
- 5. 본인은 면접 기간은 물론, 그 후에라도 지득한 개인의 정보 및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3-2호] 이해관계 회피 신청서

〈신설 2024.01.12.〉

이해관계 회피 신청서				
신청자	성명			
건경시	소 속			
회피 대상자				
회피 직무	□ 면접심사 □ 기타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면접대상자가 면접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 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소속인 경우			
회피 원인	□ 면접대상자가 면접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거나 법인, 단체에 소속인 경우			
44 EC	□ 면접대상자가 퇴직 2년 이내 면접위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소속인 경우			
	□ 면접대상자가 퇴직 2년 이내 면접위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거나 법인, 단체 소속인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				
	신 청 자 (서명)			
	한국국제협력단 귀중			

[별지 제**24호**] 삭제 <2018.12.28.>

[별지 제25호] 삭제 <2018.12.28.>

[별지 제26호] 삭제 <2018.12.28.>

[별지 제27호] 국내교육 수료증

<신설 2016.05.03.>

국내교육 수료증 (제13조의 5관련)

제 {{수료번호}} 호

성 명:

파견국가:

파견직종:

교육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위의 사람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실시하는 해외봉사단 국내교육과정을 나눔과 봉사의 정신으로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사장

[별지 제28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강사용)

〈개정 2016.05.03., 2018.12.2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강사용)

한국국제협력단은 강사료 지급 및 WFK통합교육 강사추천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 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필수항목)]

수집·이-	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자택/휴대폰) ※외국인: 비자유형, 외국어	●E-mail 주소 ●학력사항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계좌번호 능력	① 면접 교통비 지급 ② 강의 및 원고료 지급 ③ 강사 등급 및 우대사항 확인 ④ 강의증명서 발급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강				

사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WFK통합교육기관 및 국제개발협력 유관기관	유관기관 강사추천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강사 위촉에는 제한을 받지 않으나, 교육 유관기관에					

강사 추천은 불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 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기간
이키키스러스즈 바레	주민등록번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E14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항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중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http://www.koica.go.kr)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진술서

성명		파견국		
파견직종		교육기간(기수)		
<진술내용	3>			
		작	년 성자	월 일 (인)
한	국국제협력단 글	문로벌인재교	교육원장	귀하

교육위원회 의결요구서

인적	① 성 명		② 파견국				
사항	③ 파견직종		④ 교육기간 (기수)				
⑤ 규정 위반내용	수칙위반(제재)조치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원인행위 서술						
⑥ 관련내규	위반내용과 관	<u> 원</u> 런한 내규 명기					
⑦ 의결요구 조치	구두주의, 주의, 경고, 퇴교 등 의결요구 조치 기술						
위와 같	이 교육수칙 위	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한국:	국제 협력 딘	· 글로벌인	재교육원	장 귀하			

교육위원회 의결서

인적	① 성 명		② 파견국			
사항	③ 파견직종		④ 교육기간	간(기수)		
	수칙위반(제재)조치 교육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원인행위 서술					
⑥ 관련내규	위반내용과 된	관련한 내규 명	7]			
⑦ 의결내용	· 구두주의, 주의, 경고, 퇴교 등 의결사항 기술					
	위와 같이	수칙위반(제재)	조치를 의결	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장 글로벌인자	교육원 000	원장		(인)
	위·		교육원 000	부원장		(인)
	위·		교육원 000	과장		(인)
	위· 이		교육원 000	직원 기 이		(인)
	위·	천 글도벌인자	교육원 000	직원		(인)

[별지 제32호] 교육위원회 결과통지서

<신설 2018.12.28.> <개정 2025.01.02.>

교육위원회 결과통지서

인적	1)	성 명		②파견국	
사항	33	파견직종		④교육기간(기수)	
⑤조치곁	불과	구두주의	, 주의, 경고, 퇴교	등 조치내용 서술	
⑥사유 관련근		<i>조치사유</i> (관련근거	<i>및 관련근거 명기</i> : 000)		

귀하

상기 조치 결과는 해외봉사단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 바, 위와 같이 처분되었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인재교육원장

(퇴교자의 귀가기일: . . 한)

※ 퇴교 조치가 의결됐을 경우에만 작성

참 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 4(교육위원회 재심)에 의하여 본 교육위원회 결과통지서를 받 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재심 청구서

인적	① 성 명		② 파견국		
사항	③ 파견직종		④ 교육기간(기수)	
⑤ 청구이유					
⑥ 요망사항					
ㅇ반증서류 :	별 첨				
년	월 일부 제재	조치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자	내심을 청구합니다.	
			Ļ	면 월 일	
			작성자	(인)	
한국	국제 협력 [간 글로벌	인재교육	원장 귀하	

직무윤리 자가진단 서약서

직위: 위원회 위원

성명: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 1. 위원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 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행 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 년 00월 00일

<신설 2019.12.09.>

보안서약서

본인은 20XX년 XX월 XX일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자문단) 복무관리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봉사단(자문단) 복무관리 심의에 임함에 있어 모든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 2. 해당 심의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금 품.향응수수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겠으며, 향후 비리에 연루될 경우 관련 사항에 따라 법적 제재 조치 및 신상 공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3.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심의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할 경우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4. 본인은 심의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외부 전 문 인력풀(POOL)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휴대폰 전화번호:

주 소:

계좌번호:

20XX 년 XX 월 XX 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4-3호] 삭제 <2021.11.23.>

[별지 제34-4호] 삭제 <2021.11.23.>

[별지 제34-5호] 삭제 <2021.11.23.>

청 렴 서 약 서

나는 KOICA 해외봉사단원으로서 파견국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신뢰받는 해외봉사단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다음 사항을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합니다.

- 하나, 나는 정부파견 해외봉사단원으로서 활동기간 중 봉사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 금품·항응 수수 등 부정부패행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봉사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 하나, 나는 파견국 주민에게 부당한 요구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KOICA 봉사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겠습니다.
- 하나, 나는 허위보고 금지, 사업경비 공적사용 등 KOICA 봉사단 제 반 규정을 준수하고 봉사단원과 해외사무소 간 상호 신뢰와 존중 을 바탕으로 맡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 하나, 나는 파견국 주민이나 동료 단원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성희 롱, 성폭력 등 성평등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파견기수:

파 견 국:

성 명: (서명)

코이카봉사단 출국포기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기수		파 견 국	
상	기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イ	우로 출국을 포 <i>기</i>]하고자 합니다.
	※ 육하원칙에 따라 상	세하게 적어주/	시기 바랍니다.
芝			
국			
7]			
사			
ب			

년 월 일 신청자: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